

연구보고 2009-09

# 보험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험지주회사 관련법제 개선방안

한 정 미

# 보험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험지주회사 관련법제 개선방안

Improvement in laws related to insurance holding  
company due to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insurance industry

연구자 : 한정미(부연구위원)

Han, Joung-Mi

2009. 10. 31.

## 국문 요약

2008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비은행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으로써 ‘보험지주회사’ 허용, ‘금융투자지주회사’ 허용,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등 관련 규제 완화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9일 『은행법』 개정을 시작으로, 2009년 7월 31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의 상향조정,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허용 등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였으며, 이들 금융관련 법과의 균형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부분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험지주회사 관련 개정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보험계약자 및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에 대한 적용판단이나, 내부통제제도의 확립 등 보험지주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보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보이고 있는 대응정책 및 금융위기에 대한 사전적 대비책으로써의 규제 및 감독 강화 논의 및 Firewall 강화정책과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보험지주회사의 지배형태에 관한 논의로 손자회사의 업종규제에 관한 완화 및 은행업 지배허용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법제의 체계의 측면으로나, 현행 보험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하면, 시기상조라 할 것이며, 특히 산업자본의 은행업의 지배를 논하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예가 없는 것이고 금산분리의 수준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보험지주회사의 규제형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보험지주회사의 규제체계를 그대로 금

용지주회사법에 두면서 영업규제에 관한 내용을 완화 또는 개정해 나갈 것인지, 보험산업 자체의 겸업화·대형화, 업종의 다양화 논의를 반영하여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율법 체계를 금융지주회사법과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키워드 : 보험지주회사, 보험산업, 금융지주회사, 비은행 지주회사, 은행법

## Abstract

On October 2008, the Finance Committee announced improvements in the finance holding company system and presented policies allowing insurance holding companies, financial investment holding companies as well as establishing non-banking holding companies.

With the changes in the bank laws on June 9th, 2009,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laws were changed on July 31st, 2009. Changes are also going to be implemented in the regulation of monopoly and fair trade as well.

However, such amendments to the laws regarding insurance holding companies may lessen restrictions on non-banking holding companies and cause a conflict of interest among policyholders and financial customers. In order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the reassessment implemented to keep the insurance holding companies in good health, such as application of ban on self-dealing by directors and establishing an internal control system. These reassessments are in the same line with the firewall policies shown by the major countries in respons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On the other hand, discussions on the form of governance of the insurance holding companies in regards to easing regulations on the subsidiaries and allowing banking governance are definitely too early regarding the finance-related law system and the governance system of the current insurance companies. Moreover, separating the governance of banking has no precedence even in the U.S. or Japan, and should be regarded separately.

Moreover, there is a long-term need for reexamination of the regulatory form of the insurance holding companies. For example, there is a need

for along-term research regarding whether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insurance holding companies should be kept under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laws while implementing changes in the business system or to bring in the discussions of business integration, upsizing and diversifica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to separate the regulatory system on the insurance holding companies.

※ Key Words : insurance holding company, insurance industry, finance holding company, non-banking holding company, bank law

# 목 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3
제 2 장 금융지주회사 개관 .....	17
제 1 절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배경 .....	17
I.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배경 .....	17
II. 금산분리의 원칙에 관한 논의 .....	23
III. 보험지주회사의 규제차이 .....	28
제 2 절 금융지주회사 관련 현황 .....	30
I. 보험회사 현황 .....	30
II. 대기업집단 관련 금융회사 현황 .....	35
제 3 절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제 .....	37
I. 일반지주회사 .....	37
II. 금융지주회사 .....	44
III. 보험지주회사 관련 개정의 쟁점사항 .....	55
제 3 장 주요국의 보험지주회사 제도 .....	75

제 1 절 미 국 .....	75
I. 금산분리 관련 법제의 변화 .....	75
II. 보험지주회사 모델법의 규제 .....	80
제 2 절 E U .....	84
I. EU의 복합금융그룹체제 .....	84
II.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 .....	89
제 3 절 독 일 .....	94
I. 보험지주회사 관련 금융규제의 원칙 .....	94
II.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	95
제 4 절 영 국 .....	98
I. 보험지주회사 관련 규제 .....	98
II.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	99
제 5 절 일 본 .....	101
I. 지주회사제도의 허용 .....	101
II. 보험지주회사 현황 .....	103
III. 보험지주회사 관련 규제 .....	105
IV.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	110
제 6 절 소 결 .....	112
제 4 장 보험지주회사 관련법제 개선방안 .....	119
제 1 절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문제점 .....	119
제 2 절 금융법 규제체계의 조화방안 .....	120
I. 중복규제의 개선 .....	120



II. 보험지주회사와 자본시장법의 조화 .....	122
III. 보험지주회사와 공정거래법의 조화 .....	128
제 3 절 금산분리 완화의 제도적 보완 .....	133
I. 보완의 필요성 .....	133
II. 임직원 겸직허용에 대한 보완 .....	134
III. 자회사 등 신용공여한도의 제한 .....	145
제 4 절 보험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업종조정 .....	149
I. 보험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업종규제 .....	149
II. 보험지주회사 업종규제의 유지 .....	150
제 5 장 결 론 .....	155
참 고 문 헌 .....	15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2008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비은행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으로써 ‘보험지주회사’ 허용, ‘금융투자지주회사’ 허용,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등 관련 규제 완화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9일 『은행법』 개정을 시작으로, 2009년 7월 31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의 상향조정,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허용 등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였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부분 개정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9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였고,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도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법은 업종별로 금융지주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이전에도 원칙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하였으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이후 4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보험지주회사가 설립된 예는 없다. 외견상 보험지주회사 설립에 법적 제한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배관계나 출자관계를 고려하면,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보험지주회사가 출현할 수 없었던 이유로는 가장 먼저 금산분리의 원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서도 엄격히 유지되어 왔다. 특히, 금산분리원칙은 은행은 물론, 보험회사

에 대하여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었다. 예컨대, 개정 전의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보유를 제한하는데 더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고,<sup>1)</sup>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주식취득을 그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에서 하도록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 또는 보험자회사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자회사·손자회사의 업무연관성을 요구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금고화와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한하고 있었다.<sup>2)</sup>

이러한 입법경향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정부가 구조조정대상 부실은행 등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였던<sup>3)</sup> 연혁적인 면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의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과는 그 출발부터 달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윤추구에 주력하는 산업자본과 달리 은행은 신용을 창출하고 한국은행의 지원을 받으며, 은행의 불안정성이 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분명 금산분리 원칙은 그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하나로 모든 은행·금융·보험회사를 포괄하는 입법례를 찾기는 어려우며, 은행·금융·보험회

---

1) 은행법의 이 규정은 2009. 6. 9. 9%로 개정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후술함.

2) 김선정, “금융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 규율방식의 분리에 관한 검토”, 경영법률 2008. 10, 44쪽.

3) 1997년 말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로 한빛은행(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의 합병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평화은행 등을 편입하였다.

사간 위험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법에 규정되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한 지적이 있어왔다.<sup>4)</sup>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를 고수하여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업운영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합리한 규제는 아닌지에 대한 의문과 논의가 있어왔다.<sup>5)</sup>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09년 7월 기존의 금융지주회사법을 비롯한 지주회사 관련 법제하에서는 보험지주회사 설립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개선하여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 체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측면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관련 법의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그룹화 현상이 더욱 보편화 될 것이라는 것을 연구의 전제로 하는 한편, 보험산업 자체적인 측면에서도 겸업화·대형화 등 보험산업의 구조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보험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가 요구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보험지주회사 관련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보험지주회사의 근거법이며, 규제체계의 기본이 되는 금융지주회

---

4) 안철경·이상우,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6, 173쪽.

5) 이진범·김우진,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5. 12, 3쪽 ; 이동원, “지주회사의 현대적 의의”, 한국비교사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6. 11. 4, 92쪽.

사법의 제정배경과 금산분리 원칙에 관한 논의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 현황과 관련 법제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를 분석·비교한다. 예컨대, 미국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은행지주회사법, 보험지주회사 모델법 등을 비롯하여, EU의 금융복합그룹지침 등의 내용과 독일의 보험감독법의 개정, 일본의 보험업법, 독점규제법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장에서는 보험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 관련 문제점을 먼저 설명하고, 보험지주회사 규제체계와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 보험지주회사 관련 금융법의 조화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금산분리완화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임직원 겸직허용에 대한 보완책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고, 보험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업종제한 완화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비롯하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1차례의 사전 전문가 회의<sup>6)</sup>와 3차례의 전문가 워크숍<sup>7)</sup>에

---

6) 2009년 연구를 위한 사전 전문가 회의로써 개최된 『보험산업 관련 법제의 동향과 과제』(2008. 12. 19)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진삼현(숭실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양만식(단국대학교 교수),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연구센터장)의 지정토론이 있었고, “보험업법의 개정방향과 정책현황”이라는 주제로 이종민(금융위원회 사무관)의 발제와 정병덕(영산대학교 교수),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장)의 토론이 있었다.

7) 제1차 전문가 워크숍 『주요국의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동향과 쟁점』(2009. 3. 20)에서는 “미국의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김광록(충북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이영중(카톨릭대학교 교수),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이 있었고, “일본의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와 맹수석(충남대학교 교수), 이효경(판동대학교 교수)의 지정토론이 있었으며, “EU의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최승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김성탁(인하대학교 교수), 유주선(강남대학교 교수)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제2차 전문가 워크숍 『금융기관 규제현황과 과제』(2009. 6. 19)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과 보험산업의 업무영역 변화”라는 주제로 이태열(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의 발제와 권기훈(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범준(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이 있었고, “금융기관 영업행위규제의 불균형에 관한 검토”라는 주제로 정희수(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발제와 류근옥(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 교

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

수),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이 있었으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쟁점검토”라는 주제로 김두진(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발제와 박영태(법제처 법제관), 오승한(아주대학교 교수)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제3차 전문가 워크숍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변화와 법적과제』(2009. 9. 25)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과 보험지주회사제도”라는 주제로 민세진(동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발제와 이동원(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정토론이 있었고, “독일의 금융규제 현황과 보험지주회사제도”라는 주제로 유주선(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발제와 김상규(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정토론이 있었으며, “영국의 금융규제 현황과 보험지주회사제도”라는 주제로 박영준(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제와 이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 제 2 장 금융지주회사 개관

### 제 1 절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배경

#### I.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배경

##### 1. 지주회사제도의 허용

지주회사제도는 분사화를 통한 비주력 사업부문의 분리매각이 쉽고, 사업의 진입·퇴출이 용이하여 구조조정에 유용한 기업조직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출자관계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단순·투명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소수주주의 경영감시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지주회사체제를 허용할 경우 주식 피라미딩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다수 기업을 지배할 수 있어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중요자산의 대부분을 자회사가 소유한 순수지주회사 그룹의 경우 지주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가 자기재량 하에 행사함에 따라 지주회사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sup>8)</sup>

이러한 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에 따라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의 감시가 미흡하고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인한 소유구조 왜곡의 문제가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지주회사를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고,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경쟁압력이 제고되고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등과 같은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체제가 갖추어짐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

8) 김학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지주회사와 법』, 소화, 2005, 4쪽.

을 허용하더라도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소지는 크게 축소되었다고 보고, 1999년의 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지주회사 제도가 허용되었다.<sup>9)</sup>

## 2.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제도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달성하기 어려웠고, 현실적으로 지주회사제도의 허용이유였던 구조조정 문제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상의 손자회사금지 규정 및 은행법상의 동일인 4% 소유제한 때문에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었다. 또한 자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한 지주회사의 설립이 어려워 자회사의 소액주주와 지주회사간에 이익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금융의 자율화·국제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요구에 맞추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용이토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2000년에 제정하였다.

즉, 금융지주회사는 합병에 비하여 인사·조직면에서 통합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자회사의 전문성 유지 및 통합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함으로써 대형화 추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요건, 금융감독기관의 규제체계를 개별법마다 담을 경우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상법 및 은행법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게 되었다.<sup>10)</sup>

9)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3. 25, 255쪽.

10) (구)재정경제부와 (구)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 제정요강’.



### 3.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

#### (1) 장 점

지주회사체제는 지주회사로 하여금 그룹전체의 관점에서 거시적이고 탄력적인 경영의사결정을 수행하게 하고, 각 자회사는 전문경영자가 각 사업부문에서 경영을 전담하게 하는 경영분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sup>11)</sup> 이러한 지주회사의 도입 목적이 순조롭게 달성된다는 조건하에서 지주회사의 긍정적인 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지주회사는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진출과 퇴출이 용이하며, 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경우 조직의 통합, 임금 및 인사상의 처우 등 복잡한 문제가 있고 기업문화의 융화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을 통한 자회사 편입만으로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실적이 좋지 못한 자회사는 지분매각을 통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또 두 개의 금융기관이 합병할 경우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즉 합병의 전 단계로서 두 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병렬로 배치함으로써 조직 및 인사상의 마찰, 서로 다른 조직문화의 충돌 등의 문제점을 완화시킨 후 합병할 경우 합병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 대형화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어 왔다. 실제로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BNP파리바그룹 등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금융지주회사형태를 취하고 있다.

---

2000. 6. 참고

11) 강형철,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향후전망”, 자본시장 Weekly, 2008. 4. 29. 1쪽.

둘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겸업화와 대형화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간 수평적 협조체제를 형성하여 업무보완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자회사간 상호협조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용이하며,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 및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예외로서,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일정한 범위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점이나,<sup>12)</sup>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셋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전념하고 자회사는 사업에 전념함으로써 그룹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i) 일상적인 경영판단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ii)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하여 자회사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경영자원을 배분함으로써 개별 자회사 및 그룹전체의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iii) 자회사들의 공통 후선사업부문을 지주회사 또는 별도의 자회사에 통합함으로써 비용절감효과도 기대된다. 자회사는 i) 영위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명확해지므로 전문경영자에 의한 합리적 경영이 가능하며, ii) 각 자회사별로 독립된 사업부문을 운영하기 때문에 각 자회사 특성에 맞는 경영이 가능해진다<sup>13)</sup>.

넷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에는 신용공여제한 또는 출자제한 등 차단벽(fire-wall)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자

12)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 참조.

13) 이동원, 「지주회사」, 세창출판사, 2000, 178쪽.

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로 전이(contagion)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기본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차단벽은 은행이 그 제휴회사로부터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막고, 은행에 지원된 연방보조금이 은행 이외의 제휴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고위험·고수익 사업에로의 진출이 용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다섯째, 금융지주회사법 제11조에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회사에 배분하는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을 지배하는 외에 자회사 등에 출자 혹은 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자회사 등의 사업계획과 성과 배분의 일정부분에 관여를 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일체성을 갖는 경영을 추구할 수 있다.<sup>14)</sup>

## (2) 단 점

금융지주회사의 장점으로 꼽히는 사업다각화가 반드시 은행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다각화가 국내시장의 포화상태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지주회사는 조직구조가 다단계화되어 있어 잘못 운영될 경우 의사결정단계 및 경영지원기능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경영비효율성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4) 윤법렬·김지은, “금융지주회사법 소고”, BFL 제34호, 2009. 3, 113쪽.

전부 소유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이 제한될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경영기간에 의견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둘째, 지주회사는 소유의 다단계화를 통한 기업확장으로 비교적 소액자본으로 다수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주회사 설립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채비율제한<sup>15)</sup> 및 자회사출자한도<sup>16)</sup> 등을 통해 무분별한 자회사편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회사 편입시 경쟁제한여부에 대하여 금감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의 일부만 소유함에 따라 자회사의 소액주주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일부만 소유하더라도 자회사로 인정하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는 한정된 자본으로 많은 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자회사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그룹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반면, 자회사의 소액주주들은 해당 자회사의 가치를 최대화하려 하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소액주주들간에 이행상충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해상충문제는 소액주주권이 강화되어 있을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금융그룹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경영전략이 어떤 자회사에게 희생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이 경영전략에 반대하여 실행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은 복잡한 법률문제를 발생시켜서 금융지

15)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공정거래법 제8조의2)

16)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금융지주회사법 제46조).

주회사의 정상적인 자회사 경영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외국의 금융지주회사들은 대부분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전부 소유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 II. 금산분리의 원칙에 관한 논의

### 1. 서 설

산업자본이란 비금융부문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거나 전체 자본비중의 25%를 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2009년 정부는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함께 금산분리 등 금융기관의 사전적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발표하여 금산분리 완화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표 - 1> 금산분리규제 완화방안의 주요내용

항 목		주요내용
은행주 식보유 합리화 방안	PEF (사모출자 회사)	엄격한 사전·사후 감독을 전제로 산업자본인 LP (유한책임사원)의 PEF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	사전심사·사후감독 강화를 전제로 보유한도를 10%로 상향조정
금융 지주 회사	비금융회사 지배허용	보험지주회사 : 지주회사의 자회사형태로 비금융 회사를 직접 지배(비금융 손자회사 보유는 금지) 금융투자지주회사 : 직접지배방식 외에 금융자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지배(손자회사 등)하는 방식도 허용

항 목		주요내용
일반 지주 회사	일반지주회사의 보험·증권 자회사 허용	일반 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자회사 의 보유를 허용 대기업집단 소속 PEF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의결 권 제한 규정을 5년간 배제

자료 : 금융위원회(2008. 10), 공정거래위원회(2008. 12) 보도자료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특수한 기업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으로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일부 그룹의 경우 지배구조 및 승계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은행법에서 금산분리원칙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은산분리 완화의 주장에 따른 산업에 의한 은행의 사금고화로 인한 위험성이다. 이와 관련한 하나의 역사적 예는 1930년대 일본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17)</sup>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 스미토모(住友) 등 주요 zaibatsu<sup>18)</sup>가문들은 메이지정부가 1880년에 국영기업의 대규모민영화를 하였을 때 전국적 규모로 나타났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자본수요를 만족시키면서도 가문의 지배권을 보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피라미드식의 기업집단 소유구조에 의하여 여러 단계에 걸친 기업간 재출자의 방식으로 가공자본을 만들어 내어 공중투자자들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17) 이하 일본의 금산분리원칙 관련 내용은 김두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쟁점검토(금융지주회사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규제현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09. 6. 19, 81쪽 이하를 전거함.

18) 2차세계대전을 경계로 일본의 대규모기업집단은 財閥(zaibatsu)과 系列(keiretsu)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후자와 계열화된 기업들의 거대 피라미드형태인 차이가 있다. 일본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zaibatsu, 군국주의시대의 중앙계획 종속, 종전후 군정기의 영미식 주식이 분산된 공개기업으로의 재편(재벌해체), 최종적으로 현재와 같은 keiretsu기업집단으로 구조조정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방법을 찾아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초에 일본은 대공황으로 절정에 달하는 디플레를 겪었고 1923년의 관동대지진은 경제를 붕괴시켜서 스즈키(鈴木)와 같은 주요 zaibatsu들도 파산하였다. 이 시기를 견뎌내고 생존한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zaibatsu는 모두 은행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들은 다 각 피라미드의 정점에 가까웠다. 따라서 터널링으로 이 은행들의 자산과 수익은 증가하는 경향이였다. 또한 이들 zaibatsu의 은행들은 여신이 다각화되어 있어서 zaibatsu기업에 대한 여신은 10 내지 20%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파산한 다른 zaibatsu가문들은 각기 소유한 은행을 계열기업들의 소요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였다. 이들 이른바 기관은행(organ banks)들의 여신은 따라서 거의 다각화되지 않았다. 예컨대 스즈키계인 타이완은행 여신의 72%, 나카자와은행 여신의 94%, 와타나베은행 여신의 75%, 마쓰카타 zaibatsu의 주고은행 여신의 75%는 각 계열기업들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3월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함)』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금산분리 규제인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한도”규정이 제정되었다.

금산법 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유하면서 소속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산법상의 소유제한 규정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소유제한 규정이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 자산운용규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쟁점에 도출 및 개선방안의 바탕이 되었

던 금산분리 원칙의 유지의견과 완화의견을 모두 제시해 본다.

## 2. 금산분리 원칙의 유지 의견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유지 의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부 그룹이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의 교차출자를 통해 그룹의 지배력을 유지·승계하고 있는데, 금산분리의 원칙을 완화할 경우 금융계열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나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계열사 동시보유 등이 허용될 것이므로 재벌그룹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sup>19)</sup>

또한, 현행 금융지주회사 제도 하에서도 산업자본이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보험업법상 보험지주회사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각종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배제하자는 것으로, 결국 보험지주회사 산하에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결국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 사이의 교차출자를 통해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유지·승계하는 것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sup>20)</sup>

한편, 재벌의 금융계열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보험회사와 자산운용회사는 대부분 비상장회사이다. 따라서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인 도입,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의 완화 등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조치들이 이들 비상장 금융계열사들의 경우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의한 이해충돌의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내부규율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sup>21)</sup>

---

19) 참여연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홈페이지, 2008. 11. 12, 1쪽 ; 경제개혁연대, “삼성과 금산분리”, 경제개혁리포트 금산분리 특집 4호, 2008. 1. 22, 6쪽.

20) 경제개혁연대, 앞의 논문, 24쪽.



### 3.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의견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측의 금산분리 원칙 관련법 개정요구의 논거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제기준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엄격한 사전적·확실적 은행주식보유 규제를 유지하여<sup>21)</sup>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주회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산분리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금확충을 쉽게 하여 시중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은행의 성장을 돕는 정책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대주주의 자금조달원으로서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은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제한,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절차적 규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대주주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한다.<sup>22)</sup>

일부의 국내 은행의 주요 주주지분이 대체로 10% 이내로 분산되어 있어 산업자본이 은행주의 10%만 취득해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자본이 1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지방은행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산업자본이 10% 이내에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최대주주

21) 김상조, “미국 보험지주회사제도에서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 사회경제평론 제26호, 35쪽.

22)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금산분리 사전규제가 없으며, 금산분리 규제가 강하다는 미국(15%), 이탈리아(15%)의 경우도 한국(4%)에 비해 규제수준이 미약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3)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10대 쟁점과 실상”, 2009. 2, 5쪽.

가 될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부작용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배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sup>24)</sup>

### Ⅲ. 보험지주회사의 규제차이

#### 1. 규제차이의 근거

일반 산업회사에는 없는 규제가 금융회사에 가해지듯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금융지주회사에는 추가적인 규제사항들이 생긴다. 그리고 금융업종마다 시장 실패의 종류와 잠재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위하는 금융업에 따라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의 종류와 수준이 다르며, 이들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규제의 수준이 다르다.

결과적으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업종 간 규제의 차이를 인정하여 은행에는 규제를 강하게 하되, 여타 금융업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험지주회사는 특히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적용될 필연성을 갖고 있다.

#### 2. 은행규제 및 감독과의 비교<sup>25)</sup>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차이가 있는 근거는 은행규제 및 감독에 대한 전통적인 근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은행이 지급결제 및 청산 등 금융시스템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은행은 다수의 대부자들에 대한 유일한 자금원이고 지급결제기능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에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은행시스템이 위험에 처하면 다른 금융분야보다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로 전술한 바와 같이 예금인출사태로 인한 잠

24)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의 자료, 제8쪽.

25) 민세진, “보험지주회사의 법적 쟁점”, BFL 제29호, 2008. 5, 53쪽.

재적 시스템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셋째의 근거는 시스템위험과 관련된 은행계약의 특성이다. 은행은 유동적인 예금계약을 제공하고 그 예금을 불확실하고 비유동적인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데, 은행 이외의 제3자는 대출 받은 사람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은행대출은 2차 시장에서 매각하기 곤란하다. 자산을 필요할 때 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은 건전한 은행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특히 공황사태에서는 자산가치의 하락이 매우 심해질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중앙은행과 같은 은행에 대한 최종대부자 및 예금보험 등 기타 안전망의 존재로 인해 은행의 운영자체가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 노출된다. 즉 시스템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망을 믿고 개별 은행이 과도하게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각 측면에서 은행과 다르다. 즉, 보험사의 부채(보험계약)는 장기이기 때문에 은행 예금인출사태와 같은 급박한 해지사태가 벌어질 위험이 낮고, 보험사들은 시장거래나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자산 역시 2차 시장을 통해 쉽게 매각할 수 있다. 보험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약속이행여부는 자산운용의 실적에 달려있되, 보험사는 은행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자산을 변환한다. 즉 은행은 유동적 부채(은행예금)를 비유동적 자산(은행대출)으로 전환하는데 반해, 보험사는 비유동적 부채(보험계약)를 유동적 자산(채권, 주식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sup>26)</sup>

이러한 차이에 기반하여 보험회사는 은행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를 지배하는 보험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소유의 요건 및 지주회사체제 내의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등에서 달리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

26) 민세진, 앞의 논문, 54쪽.

## 제 2 절 금융지주회사 관련 현황

### I. 보험회사 현황

#### 1. 국내 보험회사 운영현황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운영 중인 국내 보험회사의 현황을 손해 보험사와 생명보험사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 2> 보험회사 현황

구 분			보험사명	계
손 보	국 내	일반	그린화재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서울보증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제일화재 코리안리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5개사
		손해 보험사		

구 분		보험사명	계
외 국	전업 손해보 험사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 서울보증 에르고다움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 코리안리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	5개사
	일반 손해보 험사	ACE RSA 미쓰이스미토모해상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페더럴	5개사
	전업 손해보 험사	AIG유나이티드개런티인슈어런스아시아리 미티드 교보약사손해보험주식회사 동경해상 뮌헨재보 스위스재보 스코리인슈어런스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 디한국지점 알지에이 리인슈어런스 컴파니 한국지점 임플로이어스재보 젠위스 모기지 인슈어런스 코포레이션 한 국지점 퀵른재보 퍼스트권원 하노버재보험(주) 한국지점	12개사
총 손해보험사			37개사
생 보	국내 생보사	LIG생명 교보생명	14개사

제 2 장 금융지주회사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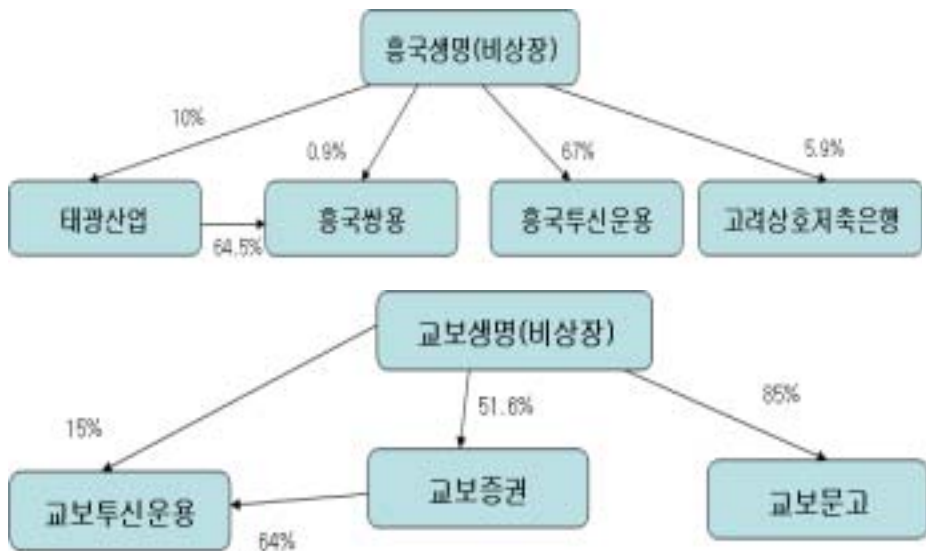
구 분	보험사명	계
	금호생명 녹십자생명 대한생명 동부생명보험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 에스에이치앤씨생명 케이비생명 하나에이치에스비씨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	
합작 생보사	동양생명 에스에이치앤씨생명 하나에이치에스비씨생명보험주식회사	3개사
외국 생보사	ING생명 PCA생명보험 뉴욕생명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아메리카생명 알리안츠생명 푸르덴셜생명	8개사
총 생명보험사		25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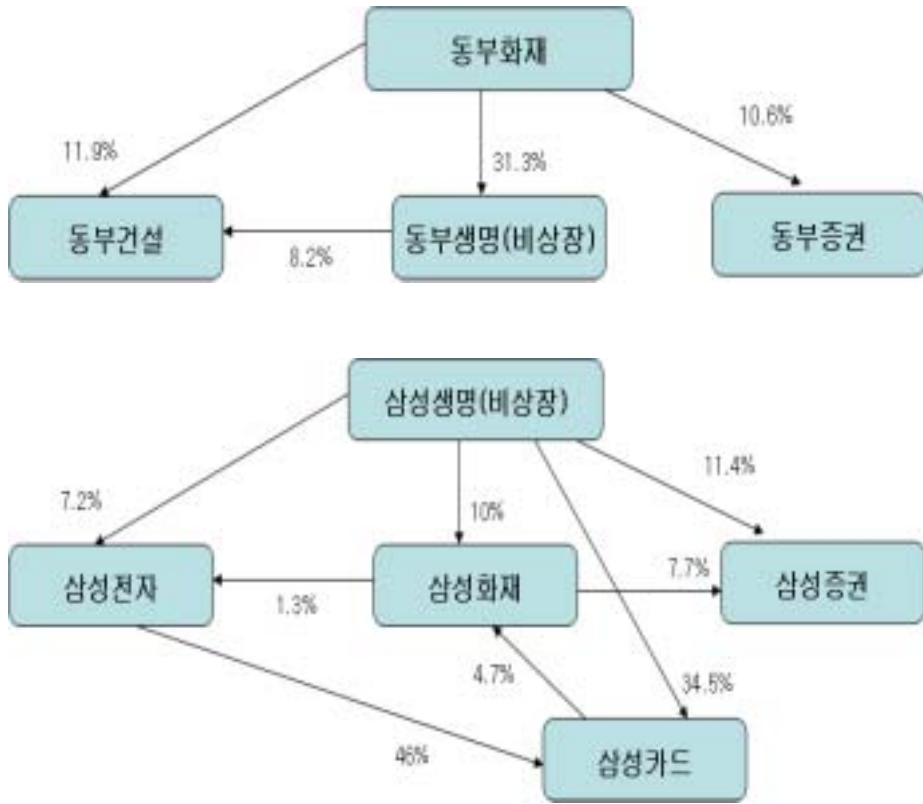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통계정보시스템(2009. 6. 기준)

2. 보험회사 계열현황

국내의 대표적인 보험회사의 계열사 현황을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 1> 보험회사 계열현황





\* 2007년 7월말 기준, 생보사 12개사 및 손보사 9개사(은행계 및 외자계 제외) 대상

\* 16개 보험그룹 중 보험회사가 비금융계열회사의 최대출자자인 경우는 흥국, 교보, 동부, 삼성 4개사

자료 : 민세진, “보험지주회사의 법적쟁점”, BFL 제9호, 2008. 5, 61쪽.

### 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현재 설립·운영 중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 3>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2008. 8. 기준)

	은행지주회사			비은행지주회사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한국투자금융
설립시기	2001. 3.	2001. 9.	2005. 12.	2003. 5.
주력자회사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기타자회사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크레디트 스위스운용 등 10개사	제주은행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생명보험 SH&C 생명보험 신한카드 LG카드 등 11개사	하나대투증권 HFG IB증권 하나생명 등 6개사	한국투자상호 저축은행 한국투자 파트너스 등 5개사

자료 : 김훈·유종민, “금융지주회사의 도입효과 분석과 발전방향”, MONTHLY BULLETIN, 2008. 9, 27쪽.

#### 4. 금융지주회사 자산비중 추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그룹화가 확산되면서 금융지주회사의 총 자산규모가 2001년 말 156조원에서 2007년말 609조원으로 3.9배 확대되었으며, 전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도 은행자회사의 대출규모 확대 등에 힘입어 2001년 말 52조원에서 2007년말 152조원으로 확대되었다.<sup>27)</sup>

## II. 대기업집단 관련 금융회사 현황

### 1. 대기업집단의 비은행금융회사 소유현황

27) 김훈·유종민, “금융지주회사의 도입효과 분석과 발전방향”, MONTHLY BULLETIN, 2008. 9, 27쪽.

출자기준으로 구분한 대기업집단의 비은행 금융기관 소유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 4> 대기업집단의 비은행금융회사 소유현황(2008. 4. 3 현재)

	기업 집단수	금융 기관수	보 험	증권·선 물·자산 운용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기타
출자총액제한 : 자산 10조원 이상	14 (10)	35	9	9	6	11
상호출자제한 : 자산 2조원 이상	79 (37)	110	20	29	15	46

\* ( ) 내는 공기업 및 비은행금융기관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집단 제외시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 2008. 10.

## 2. 보험회사를 소유한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 현황

위의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보험회사를 소유한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 보험회사를 소유한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

(2008. 4. 3. 현재)

기업 집단명	계열사 수	금융계열사
삼 성	59(10)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증권, 삼성투자신탁운용, 삼성선물, 삼성카드, 삼성벤처투자, 생보부동산신탁,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기업 집단명	계열사 수	금융계열사
롯데	46(3)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한화	40(7)	대한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한화투자신 탁운용, 한화기술금융, 대생보험심사, 대한티엠에스
동부	29(7)	동부생명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증권, 동부자 산운용, 동부캐피탈, 동부상호저축은행, 동부자동차 보험손해사정
동양	20(7)	동양생명보험,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선물, 동양투자 신탁운용, 동양캐피탈, 동양파이낸셜, 동양창업투자
태광산업	46(6)	흥국생명보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고려상호저축 은행, 예가람상호저축은행, 흥국증권중개, 흥국투자 신탁운용
교보 생명보험	11(5)	교보생명보험, 교보보험심사, 교보증권, 교보투자신 탁운용, 생보부동산신탁
금호 아시아나	52(2)	금호생명보험, 금호오토리스
미래에셋	21(14)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증권 외 12개사

\* ( )안은 금융계열사 수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 2008. 10. 21쪽 재구성.

### 제 3 절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제

#### I. 일반지주회사

##### 1.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개념

(1) 일반지주회사의 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서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로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sup>28)</sup>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보유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일반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로 구분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입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업 및 보험업<sup>29)</sup>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함)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함)를 구분하고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일부 적용되지만 금융규제로서의 특징을 반영하여 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추가로 적용된다.

(2) 지주회사와 자회사

개념적으로 지주회사는 반드시 자회사를 가져야 한다. 그 이하의 단계로는 임의로 손회사, 또는 손회사와 증손회사를 둘 수 있다. 2007년 개정 공정거래법 이전에는 손자회사는 예컨대 자회사가 생산한 상품

28)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 2부터 4까지

29) “금융업 또는 보험업”은 『통계법』제22조(표준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의 운송·보관·판매 또는 용역의 판매와 같이 자회사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일 것이 요구되었으나 현재는 자회사는 사업관련성이 없는 손자회사를 둘 수 있다. 다시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둘 수 있는데, 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손회사의 완전 자회사에 해당하는 것만 둘 수 있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법 8조의2제 4항제4호). 예컨대 고손회사와 같이 지주회사로부터 3단계를 넘는 하부의 회사는 둘 수 없고, 증손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sup>30)</sup>

이러한 지주회사의 하부회사의 3단계이하로의 제한요건의 근거는 이른바 피라미드 기업집단의 경우에 재출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현상<sup>31)</sup>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2)</sup>

## 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①자산총액과 ②주된 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1) 지주회사의 자산기준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자산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은 ①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

30) 김두진, 앞의 논문, 72-73쪽.

31) 이는 피라미드기업집단에 있어서 자본출자를 통하여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여 현실로 가지고 있는 기업의 소유권보다 큰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김학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김건식·노혁준 편저, 『지주회사와 법』, (小花, 2005), 8쪽.

32) 피라미드기업집단의 경우의 재출자에 의한 소유와 지배의 괴리현상에 관한 설명은 김두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제도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제14권, 2006, 125-126쪽 참조.

· 분할합병· 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2)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기준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 3.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관련 규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관련한 규제내용을 보면, ①부채비율의 제한, ②비계열사 주식보유의 제한, ③금산분리, ④출자단계의 규제, ⑤공동출자 및 순환형 출자금지, ⑥지분율규제, ⑦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제를 둔 이유는 지주회사 체제가 적은 자본으로 다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지배력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주회사 체제내 소유구조가 왜곡되어 소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주회사나 그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손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금지,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소유금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1) 부채비율의 제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

위”를 금지하고 있고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에서 부채비율을 제한한 것은 지주회사가 타인자본 조달을 통해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지주회사 제도 도입당시에는 그 비율이 100%였다가 2007년부터 200%로 상향 조정되었다.

## (2) 비계열사 주식보유의 제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서는 지주회사가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 외의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다만, ①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②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③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④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 (3)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는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회사 소유금지 및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금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며,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유예시켜주고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출자단계 규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출자단계를 3단계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①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②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③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④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 (5) 공동출자 및 순환형 출자금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상장사인 손자회사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보유하거나, 비상장사인 손자회사의 지분을 40%미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여 지주회사 계열사내의 공동출자 및 순환형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동조 제4항 제3호).

#### (6) 지분을 규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제는 지주회사의 본래 목적이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가 가능한 주식의 소유비율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규정에도 ①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②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③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④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스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스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⑤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

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⑥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⑦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 (7)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서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당해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8조의3). 이 규정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자회사간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연쇄부실화를 방지하고 지주회사의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완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II. 금융지주회사

### 1. 금융지주회사의 개념

#### (1)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함)의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sup>33)</sup>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sup>34)</sup>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다.<sup>35)</sup>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내에서 은행지주회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지주회사란 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은행이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sup>36)</sup>

## (2)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금융지주회사법의 동일인은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특수관계인으로는 ① 배우자, ②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③ 본인 등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경우, ④ 본인 등이 50%이상을 출자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sup>37)</sup>

다만,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

---

3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4.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34)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호

35)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

36)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5호

37) 이에 대한 상세는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 제1항 규정 참조.

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은행,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계열회사

계열회사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2이상의 회사가 서로 상대회사를 계열회사로 지칭하는 것이다(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 이와 관련하여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2조제2호).

### (4) 비금융주력자

비금융주력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①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②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③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회사 등이 포함된다.<sup>38)</sup>

### (5) 대주주

금융지주회사법에 있어서 대주주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구분되는데, 우선 최대주주를 보면,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38) 이에 대한 상세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본인을 말하는 것이며,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재산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9호).

## 2. 금융지주회사의 요건

금융지주회사의 정의는 앞서 설명하였다. 금융지주회사 정의의 요소들을 하나씩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sup>39)</sup>을 소유하여야 한다. 즉, 다른 회사의 임원을 임면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금융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

둘째,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에는 반드시 1 이상의 금융기관<sup>40)</sup>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자회사의 지배범위로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여기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 함은 ① 금융기관의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②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③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④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sup>41)</sup>

넷째, “지배”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

39) 지배받는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출자금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여야 한다.

40) 금융기관은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4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합하여 계열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것으로서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지배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배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어야 한다. 즉 금융지주회사와 지배대상회사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이어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계열회사의 최대출자자이어야 한다.<sup>42)</sup>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지분율기준)이거나 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의 선임 등 당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영향력기준) 서로 상대회사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된다. 따라서 영향력기준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가 되더라도 최대출자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계열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될 경우에 한해 당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최대출자자는 계열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보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열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최대출자자는 최대지분 보유자라고 할 수 있다.

③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합하여

---

42)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여 계열회사가 되면 지배가 성립되는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지배는 계열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어야만 성립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개념이 공정거래법상 지배개념보다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양 법에서 정하는 지배의 개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내 소속 계열회사의 출자총액, 상호출자 및 지급보증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됨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한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보다 강화된 지배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소유하는 주식의 개별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수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이는 금융지주회사가 그 자회사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주식은 위와 마찬가지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본다.

다섯째, 주된 사업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및 지분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식 및 지분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으로 산정하되,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 또는 분할 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여섯째,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 3. 규제내용

#### (1)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영역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동법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에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하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감사업무 등이고,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사무지원 업무,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금융지

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고 경영하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3)</sup>

1)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 승인의 의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자회사 등의 영업전략 수립시를 비롯하여 자회사 등 사이에 공동영업이나 제휴업무의 추진시의 조정과 중재역할을 함으로써 경영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이 업무는 금융지주회사가 각 자회사 등의 경영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면서도 지주회사가 의도하는 큰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업무라 할 수 있다.<sup>44)</sup>

2) 자금지원 업무의 의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가목에서는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직접적인 자금대출과 대출이외의 방법에 의한 간접적인 자금지원, 예컨대 회사채나 은행발행의 채권인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지원하는 방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가능 영역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만을 지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제2조 1항). 따라서 금융기관의 주식(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

43) 윤법렬·김지은, “금융지주회사법 소고”, BFL 제34호, 2009. 3, 111쪽.

44) 윤법렬·김지은, 앞의 논문, 111쪽.



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표준산업분류(아래 표 참조)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어야 한다(시행령 제2조 1항).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는 금융기관의 전산·정보처리,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시행령 제2조 2항).

<표 - 6>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일반은행 저축기관 신용조합 여신금융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금융리스업 기타 투자기관 투자신탁회사 기타 금융업 공공기금관리회사	생명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개인공제업 사업공제업 연금업 비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보증보험업 사회보장업 의료보험업 산업재해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재보험업	금융관련서비스업 금융시장 관리업 증권 및 선물관리소 기타 금융시장 관리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증권중개업 선물 중개업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 어음교환업 투자자문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보험 대리 및 중개업 손해사정업 기 타

자료 : 통계청,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sup>45)</sup> 참조.

45) [http://www.nso.go.kr/std2006/k07a\\_0000/k07aa\\_0000/k07aa\\_0000.html](http://www.nso.go.kr/std2006/k07a_0000/k07aa_0000/k07aa_0000.html)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시행령 제2조4항).

이때 특정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카드사, 할부금융회사, 혹은 투자신탁회사 등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그 소유한 주식가액이 그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 되면 금융지주회사가 된다.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와 손회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사업을 하는 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는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 (3)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별도규제

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라 한다. 그리고 은행지주회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소유를 4%(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로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8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은 10%이다.

그리고 4%를 초과하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초과주식은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1항). 예외적으로 금융전업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0%까지 취득가능하며, 4% 이상 취득시 금감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전업자의 경우에는 10%, 25%, 33%씩 각각 초과취득시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조). 이 때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주식을 4%이상 보유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 (4)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지배금지

우리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

를 지배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동법 제7조).

<표 - 7>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비교

	공정거래법(일반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
지주회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 지배) 지주회사(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가 계열회사의 최대출자자</li> <li>· (주된 사업) 자회사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총자산 50% 이상</li> <li>· (자산규모)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左 同 &gt;</p> <p>※ 但, ‘자회사 지배’ 및 ‘주된 사업’에서의 자회사는 금융기관인 자회사만을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는 국내 회사로 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에 외국법인도 포함</li> </ul>
진입 규제 등	<p>(설립·전환시) 공정위 사후신고</p> <p>(자회사등 편입시) 별도 규제 없음</p>	<p>(설립·전환시) 금감위 사전인가</p> <p>(자회사등 편입시) 금감위 사전승인</p>
업무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주회사도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지주회사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 영위 금지</li> </ul> </li> </ul>
지주 회사 행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左 同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 최소지분 보유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 20%, 비상장 4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 최소지분 보유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 30%, 비상장 5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주식보유 금지(금산분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금융회사 주식보유 금지(금산분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계열회사 주식은 5%까지만 보유</li> <li>○ 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금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左 同 &gt;</p>

	공정거래법(일반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
子 회사 행위 제한	○ 손자회사 최소지분 보유의무 - 상장 20%, 비상장 40%	○ 손자회사 최소지분 보유의무 - 상장 30%, 비상장 50%
	○ 금융회사 지배금지(금산분리)	○ 업무관련성 있는 회사만 지배허용 - 비금융회사 지배금지(금산분리) 포함
	○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소유금지	< 없음 >
孫子 회사 행위 제한	○ 완전증손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소유금지 * 손자회사가 100% 주식소유하는 회사	○ 증손자회사 지배금지
내부 거래 제한	< 없음 >  ※ 但, 자회사등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므로 지주회사내 순환출자 등도 금지됨	<b>【지주회사 소속회사간 Firewall】</b>  ○ 자회사·손자회사(이하 ‘자회사등’) 사이 신용공여 제한  ○ 자회사등 상호간 또는 자회사등과 지주회사 사이 불량자산 거래제한  ○ 자회사등 상호간 또는 자회사등과 지주회사 사이 주식소유 금지 (☞ 지주회사내 순환출자 등 금지)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2008. 10.

### Ⅲ. 보험지주회사 관련 개정의 쟁점사항

#### 1. 은행법의 개정

##### (1) 개정의 의미

정부는 은행주식 보유에 대한 과도하고 경직적인 사전적·수량적 규제가 국내은행 투자자 저변을 위축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2009년 6월 9일 은행법을 개정(2009년 10월 10일 시행예정)하였다.

개정문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상응하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하고 있다.

오랜 금산분리에 대한 논의 끝에 금융지주회사법보다 먼저 은행법에서 개정하였다는 것은 금산분리에 관한 규정을 가진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 (2) 쟁점별 개정내용

###### 1)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의 상향조정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보유한도를 4%로, 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5%로 규정하고 있었다(은행법 제16조의2).

이러한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주요국의 산업자본 은행주식 보유규제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라 하며 개정법에서는 이를 완화하였다.

즉,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9%로 조정하되 9%를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하였으며, 비

금융주력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주요국의 산업자본 은행주식 보유규제 자료로 제시한 것을 보면, EU·영국·독일 등의 경우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통해 사전적 보유규제 없이 대체로 10%까지 자유로이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미국·이탈리아 등의 경우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사전적·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10~15%, 이탈리아의 경우 15%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sup>46)</sup>

## 2)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소유규제 완화

공적 연기금이 일정 수준이상의 비금융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 산업자본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주식 보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인 공적 연기금이 해당 공적 연기금 및 그 관리주체 등과 은행의 예금자 및 다른 주주 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결국 공적 연기금의 경우 동일인 보유한도에 관한 제15조 제3항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sup>47)</sup> 다만,

46)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안”, 2009. 2. 10.

47) 은행법 제16조의 2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3.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기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해당 공적 연기금에 대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감독당국 등의 검사 및 감독 등을 받도록 하였다.

3)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

산업자본이 PEF의 투자자로서 1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해당 PEF 자체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어 은행주식 투자가 제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본국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조문을 신설하였다.

즉,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대상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은행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최대주주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2.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1) 개정의 의미

1) 개정경과

은행법의 개정이후 정부는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방안이라는 취지로 2009. 6. 10.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동년 7. 22. 국회를 통과하였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인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2008년에 같이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은행법만 2009. 4. 개정되고, 금융지주회사법은 박중희의원 대표발의안(2008년 11월 발의)이 지난 3월 정무위원회

---

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기금등과 금융기관의 예금자,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갖출 것

나. 가목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다. 그 밖에 기금 등의 주식보유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에서 수정의결<sup>48)</sup>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고, 이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sup>49)</sup> 역시 부결됨에 따라 정부가 다시 제출하여 통과된 것이다.

즉, 은행법에 따른 단독은행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의 형태인 대형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었던 것이다.

동 개정안은 비금융주력자<sup>50)</sup>(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 규제를 완화하되 이에 상응하여 주요출자자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2)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규율분리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48) 산업자본이 LP(유한책임사원)으로서 PEF에 출자하는 경우 현행은 10%이상 출자하면 당해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박종희의원 대표발의안은 그 출자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하였고, 정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20%로 조정되어 수정의결되었음.

49) 본회의에 상정된 정무위 수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산업자본이 LP로서 PEF에 출자하는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PEF 지분합계액을 현행 30%에서 50%로 조정한 내용인데 반해, 본회의 수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9%로, 산업자본이 LP로서 PEF에 출자하는 비율을 18%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PEF 지분합계액을 36%로 조정한 것임.

50)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비금융주력자를 ①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이 동일인중 자본총액 합계액의 25% 이상인 동일인 ②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신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동일인 ③ ① 또는 ②의 동일인이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회사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동일인은 동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특수관계인 : 본인의 배우자·친인척, 본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등)로 정의하고 있어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업무로 영위하는 비금융회사도 산업자본 여부 판단 시 고려대상이 됨. 이와 같이 동일인 개념은 은행법상의 특정 규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인을 집합적으로 보는 것임.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의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한다”고 한 것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써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는 형식으로 양자의 규율체계를 명확하게 분리하였다.<sup>51)</sup>

이를 반영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2개의 조항(공정거래법 제6조의3, 제6조의 4)이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이관되었으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만이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원회간의 협의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제3조 제4항 및 제5조 삭제).

### 3) 보험지주회사 등 개념의 신설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으로 보험지주회사의 설립가능성 제고, 금융투자지주회사 도입 등의 입법적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몇 가지 법적개념 조항이 신설되었다.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정의로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고 명시하였으며(제2조제1항제6호의3),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① 은행이나 ②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③ 이 두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를 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2)로 정의하고 있다. ‘증손회사’의 개념을 “손자회사에 의해 지배받는 회사”로 신설하였으며(제2조제1항제3호의2),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에 있어서 확대하고 있다(제2조제1항제8호다목부터 마목).

51) 김홍기,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지주회사 규제의 방향”, 한국경제법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9. 9. 25, 8쪽.

(2) 쟁점별 개정사항

금융지주회사법의 이번 개정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에서는 금융투자지주회사 등은 논외로 하고, 보험지주회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 정리한다.

1)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허용

일반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소유가 제한된다(제6조의 3).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제5장을 신설하여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비금융회사 지배의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금산분리 완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은행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주식보유기준에 따라 비금융자회사 발행주식의 40%이상(상장법인은 20%)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비금융회사 지배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다른회사 주식소유의 한도규정’이나,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2009년 12월부터는 증권·보험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한국투자증권 등을 자회사로 둔 한국지주가 관계사인 동원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는 것이다.<sup>52)</sup> 다만,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는 배제되며, 보험지주회사의 보험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하였다.

52) 중앙일보(2009. 7. 23), 3면 참조.

<표 - 8> 금산분리 완화 내용 비교

주요 개정사항		금융지주회사법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은행법 개정(4월)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		4%	10%	9%
PEF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 완화	산업자본이 LP로 서 PEF 출자비율	10%이상 또는 4% 초과하고 최대출자자	20%이상	18%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체열사의 PEF 지분 합계액	30%이상	40%이상	36%이상

자료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 6, 5쪽.

## 2)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제한의 완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sup>53)</sup>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상향 조정하여<sup>54)</sup> 산업자본의 은행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였다(제8조의2 제1항).

다만,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 제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제8조의4 제1항),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

53) 산업자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비금융주력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통상 산업자본으로 표현함

54) 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8조의4 제2항).

### 3)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특칙

보험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제5장 제2절에서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을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다.

우선 제23조에서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 인가기준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추가로 요구되었으나(자회사 등의 편입승인의 경우도 동일함),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25조에서는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첫째,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① 비금융회사, ②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③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④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인 경우, ① 은행 등, ② 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을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손자회사의 주식을 40%미만으로 보유하는 것)의 행위를 금지하였다.

다음으로, 제26조에서는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규정을 두었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은행 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은행과 금융기관을 지배할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4)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거래제한 완화

개정 전의 법률에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등의 신용공여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이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법 이외에도 보험업법 등 개별업법상의 규제를 중복하여 적용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사이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었다(개정 전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이에 반하여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자회사 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그 신용공여시 적정담보를 확보할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이는 비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의 규제가 은행지주회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되어 있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신용공여 등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이 적용되고 있어서<sup>55)</sup> 이중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으로는 자회사 등 사이의 신용공여 제한과 적정담보 확보의무는 신용리스크가 중요한 은행업에게는 타당할 수 있지만 금융투자업과 보험업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55) 보험업법 제106조에서는 보험회사의 대주주 또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되어 있고,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금융투자회사는 대주주인 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보인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신용리스크 보다는 보유자산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관리가 중요하고, 보험업의 경우에는 은행업에 비해 장기의 비유동적 부채(보험계약)를 보유하므로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의무를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56)</sup>

#### 5)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완화

개정 전의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자본에서 자회사 출자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규제에 대하여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제43조, 제46조를 삭제하였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의 영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도 일반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유지의무를 규정한 제8조의2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은 감독수준이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부채비율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주회사의 대형화를 도모하는 것은 지주회사 체제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6) 임·직원 겸임 허용범위 확대 및 업무위탁 허용범위의 확대

은행법, 보험업법에서는 상근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될 수 있고(제39조 제2항),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등의 임직원은 다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39조 제3항).

56) 김홍기, 앞의 논문, 6쪽.

한편, 제47조 제1항에서는 금융자회사 등이 자신이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하였는데, 다만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제47조 제2항).

이와 같이 임·직원의 겸직 허용이나 자회사 등의 업무위탁 허용은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간의 업무위탁 및 겸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공정거래법 개정논의

#### (1) 개정안의 의미

공정거래법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논의와 함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개정안이 2009년 4월 13일 제출되었고, 2009년 10월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동 개정안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참여하기 쉽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의 계열사 의결권제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안되었다.

#### (2) 주요내용

##### 1) 부채비율 제한의 폐지

동 개정안은 시장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부채비율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약화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자는 안을 제출하였다. 부채를 통한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은 내재적인 한계가 있고 실제로 지주회



사 부채비율은 일반회사에 비해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sup>57)</sup>

## 2)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 폐지

현행법은 지주회사가 자신의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지배력확장의 우려가 있어 이를 5%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를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비계열사 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의 위험은 크지 않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은 주로 투자목적이며, 계열사가 될 정도로 다량 취득한 경우에는 자회사로 편입되어 지주회사 규제대상에 포섭되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3) 금산분리 완화

공정거래법 상의 금산분리 규정인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대하여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자회사·손자회사는 일반손자회사·증손회사만을, 금융자회사·손자회사는 금융손자회사·증손회사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비금융 혼합지주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sup>58)</sup>

---

5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 4, 5쪽.

58) 앞의 검토보고서, 7쪽.

<표- 9> 대기업집단의 주요 금융계열사 현황('08.4월말 현재)

구 분	전체회사수	금융계열사수	금융계열사 총자산	그룹전체자산에 대한 비중
삼 성	59개	10개	148.5	54.0%
한 화	40개	7개	48.6	74.7%
동 양	20개	7개	17.2	80.3%
동 부	29개	7개	10.9	56.6%

자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 4, 8쪽.

#### 4. 보험업법의 개정논의

##### (1) 개정안의 의미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금융행위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있고,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 규율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를 규율하는 금융법에 독자적인 건전성 규제 등이 존재하므로, 자본시장법에서는 진입규제와 영업행위규제만을 하고 있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 예컨대, 은행이 투자서 있는 예금(원본이 보장되지 않는 파생결합예금, 외화예금)을 판매하거나 보험사가 투자성 있는 변액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제 77조에 두고 있어,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경우에도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 규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금융업무 영역의 확대 및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 규율의 원칙 도입 등의 영향으로 2009. 7.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에 제안된 정부안을 포함하여 13건이다.

이 중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보험상품심사제도,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 있는 보험업의 업무영역 확대,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 자산운용규제체계의 완화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 (2) 주요내용

### 1) 자산운용범위의 확대

현행 보험업법은 제105조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을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①귀금속·골동품 및 서화의 소유(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의 소유, ③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④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보험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⑤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⑥당해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의한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을 제외한다), ⑦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회사가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에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개정안에서는 현행의 규정과 같이 보험회사의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투자를 저해한다고 하면서, 보험회사가 귀금속·골동품 및 서화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업무용 부동산은 어느 유형이든 일정한 한도 이하로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

현행 보험업법 제115조에서는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금융업,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 ③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④ 그 밖에 보험업의 건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가 해당된다. 다만,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sup>59)</sup>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허용하고, 신고 대상 자회사로 분류하여 투자의 자율성 및 신속성 제고하고자 하였다.

## 3) 금융투자분야 업무 영역 확대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업무 업무 이외에 ①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② 신탁업, ③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 ④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만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험업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59) 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업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하여 보험회사도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와 같이 소비자에게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 4) 지급결제업무의 허용논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에서도 은행과 같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허용은 금융투자회사가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신탁업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증권사에 지급결제서비스가 허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60)</sup>

이러한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의 허용과 함께 보험사의 지급결제서비스 허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sup>61)</sup> 보험회사는 증권회사와 달리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으나, 보험사가 고객에게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업권간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자는 차원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금융투자회사

60) 2009년 2월말 현재 25개 증권회사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를 신청하였다. 한국은행, 2008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보고서 57쪽 참고.

61) 정부는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참여 허용에 대하여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험업법 개정안(2008년 11월)에 포함되었다가 삭제되었고,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2008년 5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 허용한 수준으로 보험회사에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방침을 발표하였고, 2008년 8월 금융위원회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과 향후과제’ 등에서도 명시된 바 있다.

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금융기관의 업무에서 자금이체업무를 삭제하였다.<sup>62)</sup> 즉, 자본시장법 제40조 제4호에서 금융투자업자의 금융업무의 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규정하면서,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투자자예탁금은 자본시장법 제74조 제1항에서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금융투자회사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중 기본적으로 전자금융·타행환·CD·CMS 공동망<sup>63)</sup> 및 지로시스템 등에 참가할 수 있다.

한편, 정부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개정안에서도 현행 제11조 ‘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 규정을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라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가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sup>64)</sup>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62) 당초 제경부 입법안(06. 12. 29)은 증권금융회사(대표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이체 업무 취급을 허용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대표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결제시스템 안전을 위한 보완수단으로는 증권금융회사를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은행의 감시기능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증권금융회사 및 대행은행을 통한 통합처리방식은 결제리스크 집중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자금이체업무를 직접 취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앞의 보고서, 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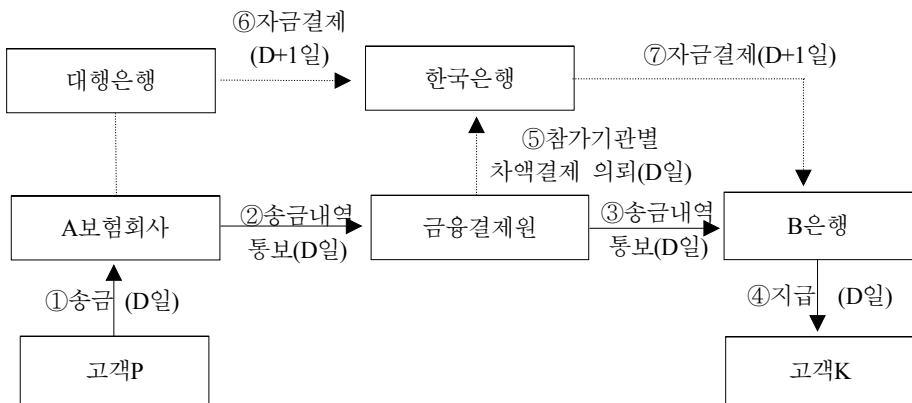
63) 전화, PC 등을 이용하여 참가기관 또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접속한 이용고객에게 타행이체 및 각종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4) 『보험업법』개정안 -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융업(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른 자금이체업무”로만 명시하였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의견 내용을 보면,<sup>65)</sup> ①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된 수준의 업무(지급지시)만 허용하도록 하고, ② 보험회사가 직접 한국은행 지급결제망에 참여하여 청산(clearing) 및 지급(settlement)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대행은행이 수행, ③ 자본시장통합법 체계에 맞춰 개별 보험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용 자산은 보험상품 등과 분리계정으로 운영하여 보험리스크가 지급결제용 자산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자산을 보험회사 내부가 아닌 대행은행에 100% 위탁하고, 우선취득권 대상에서 배제하여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추진할 예정이다.<sup>66)</sup>

<그림 - 2>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예상 흐름도



자료 : 이종민,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8. 12. 19, 37쪽.

필요한 금융업무

3.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금이체업무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65) 이종민,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8. 12. 19, 37쪽.

66) 이종민, 앞의 논문, 38쪽.

그러나 보험회사는 금융투자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참가와는 그 성격이 달라,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및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및 자산은 투자자 예치금의 개념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가 수령할 보험금에 대한 준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험상품은 일시, 정기적인 보험료 수납과 일시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의 성질상 빈번한 지급결제를 요하지 않는다.

한편, 현행 보험상품은 금융실명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급결제를 위한 수시 입출금식 상품의 개발이 어렵고, 만일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를 통해 그러한 상품이 개발될 경우라도 보험상품은 은행에 비해 고위험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sup>67)</sup>

이러한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사고에 대비한 것으로 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대형 보험사고 발생 등의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사의 파산 등의 상황에서 지급결제 정지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

67) 보험상품은 은행예금에 비해 유동성 측면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은행법』 제55조에 의해 예금채무는 예금지급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수시입출금식 예금 상품과 유사한 상품이 발매되어도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상응하는 지급준비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어 유동성 부족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 윤성은, “비예금수취기관 지급결제망 직접참여의 의미와 문제점”, *The Banker*, 2008. 10, 27쪽.



## 제 3 장 주요국의 보험지주회사 제도

### 제 1 절 미 국

#### I. 금산분리 관련 법제의 변화

##### 1. 금융서비스현대화법

1999년 제정된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이하 ‘GLBA’이라 함)<sup>68)</sup>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은행 및 보험 그리고 증권 등 모든 금융업간의 겸업을 허용한 대표적인 법이다.

그러나 GLBA이 나오기까지 금산분리 정책에 관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29년 대공황을 거치면서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결실이 바로 연방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연방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의 제정이다. 또한 1933년에 제정된 소위 글래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으로 불리는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 제정되었는데,<sup>69)</sup> 글래스 스티걸법은 투자 금융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연방준비이사회의 회원은행(member bank)

68) Gramm-Leach-Bliley Financial Modernization Act, United States Public Laws, 106th Congress - First Session (Convening January 27, 1999), PL 106-102(S 900), November 12, 1999, 113 Stat. 1338 참조.

69) 1929 10. 24 Black Thursday(11.7% 하락)부터 3일간 주가 폭락으로 시가총액 1/3이 하락하고, 근로자의 25%가 갑자기 실직하는 등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자, 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미국에서는 ‘은행이 투기적인 증권투자자들에게 방만한 대출을 하였고, 그에 따라 주가의 거품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주가의 거품이 주가폭락으로 나타나 은행이 도산하고, 경제 대공황이 도래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투기적인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Carter Glass 상원의원과 Henry Stegall 하원의원의 공동 발의로 1933년 금융영역간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글래스 스티걸 법이 통과되었다.

을 계열사로 거느릴 수 없도록 하여, 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증권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원칙을 유지하였다.<sup>70)</sup>

## 2. 은행지주회사법

글래스 스티걸법 제정 이후 은행의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은행의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이하 ‘BHCA’라 함)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BHCA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일반기업은 은행의 소유가 가능하였던 것에 반해, BHCA 제정 이후 일반기업은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총 주식의 25% 이상의 소유가 금지되었었다.

BHCA는 은행지주회사(BHC)의 영역을 은행업과 은행업관련 활동만으로 제한하였으며, BHC가 제공할 수 있는 비은행영업활동의 종류를 명시하였다. 그 밖에도 기타 비은행영업활동은 연준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으며, 비은행영업활동은 은행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였다.

종합하면, 일반기업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자본투자(equity investment)를 할 수 있지만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를 통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반기업은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의 25%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은행지주회사(BHC)의 영역을 은행업과 은행업관련 활동만으로 제한하였다. 은행지주회사는 일반기업의 주식소유를 금지시켰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BHCA에 의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HCA는 은행이 은행업이나 은행의 관리지배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회사와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여 은행이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금산분리원칙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

70) 김광록, “미국의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동향”, 『주요국의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동향과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9. 3. 20, 15쪽.

장치로 기능하게 되었다. 한편, 은행지주회사법의 제정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미국 금융산업에 있어 지배적인 조직구조로 자리하게 되었다.<sup>71)</sup> 그런데 지주회사의 주주의 유한책임과 과도한 투기적 사업으로 인한 지주회사 자체에 대한 책임부담 등의 지배구조적인 문제는 은행지주회사 중심의 금융산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sup>72)</sup>

또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경쟁 심화 및 기업의 탈은행화는 물론 글래스-스티걸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업무제휴, 해외자회사 설립 등 우회적인 방식을 통한 금융기관 간 다른 업종에의 진출 등도 기존의 글래스-스티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거세게 요구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1999년 11월 12일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GLBA에 서명함으로써 그간 논란이 되었던 글래스-스티걸법은 폐지되고 새로운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었다.<sup>73)</sup>

### 3.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GLBA에 따라 기존에 금지하던 은행의 증권 및 보험업의 겸영을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은행들은 자회사나 지주회사를 통해 보험업, 증권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증권사나 보험사도 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은행지주회사는 자회사 은행이 자본충실과 건전경영의 요건을 충족하고 연방준비이사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 GLBA는 비금융회사인 일반기업이 은행을 취득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가능토록 하였다. 기득권을 인정(grandfather authority)하

71) 김선정, 앞의 논문, 48쪽.

72) 이에 대한 상세는 백정웅, “힘의 원천이론”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 2005, 참조.

73) 김광록, 앞의 자료집, 16쪽.

는 특별조항에 의거 그 기업은 일정기간 일반기업 활동을 10년간 계속가능하게 되었다. 일반회사가 1999년 11월 12일 이후에 FHC가 되고 그 주된 업무가 금융업무라면 1999년 9월 30일 현재 법적으로 영위된 일반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BHCA section 4(n)). 다만 그 FHC는 2009년 12월 12일 이전에 일반기업 활동을 종료해야 하였다.

1999년 11월 12일 이전에 FHC가 된 일반기업의 경우 그 날로부터 2년 동안 기존의 일반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Section 4(a)(2)).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를 살펴볼 때 주의할 점은 FHC는 꼭 은행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이 포함되지 않는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FHC)라고 불리지 않는다.

은행을 포함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주회사인 경우는 보험지주회사(Insurance holding company)라고 하며 금융지주회사법 (GLB Ac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보험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일반기업을 소유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4.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규제

지주회사의 근거법은 지주회사 종류에 따라 상이한데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은행지주회사법(BHCA), 투자은행지주회사인 경우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보험지주회사인 경우 주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은행지주회사법 및 GLBA 등이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구분에 따라 감독당국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GLBA에서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 FRB)에게 부여하였다. 은행이 지주회사

를 통하여 다른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연방준비이사회가 감독권한을 갖고, 은행이 자회사를 통하여 다른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재무부가 감독권한을 갖는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에는 GLBA의 제정으로 기존 법규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본법과 주법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즉, 보험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주정부가 감독권한을 갖고 보험지주회사는 각 주의 보험감독청에서 감독을 하게 되지만, 보험사가 은행 또는 증권사를 합병하는 때에 주법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 GLBA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sup>74)</sup>

한편, 투자은행지주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ttee)가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표 - 10> 미국 금융지주회사제도 감독체제

지주회사 종류	감독기관	근거법
은행지주회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은행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BHCA, GLBA
투자은행지주회사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법
보험지주회사	주 보험감독청	주 보험업법

자료 : 안철경·이상우,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6. 9, 74쪽.

74) 김광록, “보험지주회사 도입논의를 위한 미국법제 연구”, 기업법연구 제23권 제2호, 2009. 6, 75쪽.

## II. 보험지주회사 모델법의 규제<sup>75)</sup>

### 1. 모델법의 제정

전통적으로 미국은 주간통상을 연방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나,<sup>76)</sup> 보험업의 경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간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sup>77)</sup> 연방정부의 권한을 벗어나 주법에서 그 규제체계를 발전시켜 왔다.<sup>78)</sup> 그런데 1944년 대규모 보험그룹의 반독점법 위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보험업 자체도 헌법상 연방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주간통상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대법원의 판단이 나타났고,<sup>79)</sup> 이에 따라 그간 구축되었던 보험업에 대한 주법의 규제체계가 전체적으로 부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sup>80)</sup> 따라서 연방 의회는 1944년 McCarran-Ferguson Act<sup>81)</sup>를 제정하여 연방법이 특별히 보험업에 대하여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기존의 주법이 보험업을 계속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미국에 있어 보험업이 헌법상 주간통상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주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미보험감독관회의(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 NAIC)는 각 주간의 규제격차를 해소하고, 주마다 통일적인 보험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969년 보험지주회

75) 김광록, 앞의 자료집 18-22쪽을 재구성함.

76) 미국 헌법 제1장(입법부) 제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77) Paul v. Virginia, 75 U.S. 168, 1868. 참조.

78) 김상조, 앞의 논문, 10쪽.

79) U.S. v.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n, 322 U.S. 533, 64 S. Ct. 1162, 88 L. Ed. 1440, 1944. 참조.

80) 김상조, 위의 논문, 10쪽.

81) 15 U.S.C. § 1011 et seq. [Mar. 9, 1945, ch. 20, 59 Stat. 33].

사체제 모델법(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ion Act : NAIC 모델법)<sup>82)</sup>을 제시하였고, 이 모델법은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채택되었다.

## 2. 모델법의 주요내용

### (1) 개념

NAIC 모델법상 보험지주회사는 보험회사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관계회사를 말한다.<sup>83)</sup>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은 공통적으로 보험지주회사가 보험회사의 자산을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에게 전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험지주회사법은 보험회사 자체는 물론이고 보험회사와 관계회사와의 거래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 그 규제 원칙은 경영 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중요거래에 대해서는 보험감독관에게 사전보고하거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sup>84)</sup>

### (2) 지배의 범위

지배와 관련하여 보험지주회사법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지배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보유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감독관이 사전에 해당사안에 대해

82) NAIC Model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1969); NAIC Model Revised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1984);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Model Reg. Serv. 440-1 et seq. (1992).

83) NAIC 440-1 §1D.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An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consists of two or more affiliated persons, one or more of which is an insurer.

84) 은행법의 경우에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에 입각한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Joanne M. Derrig, *Insurance Holding Company Law With Its Federal Banking Law Counterparts*,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3, No. 4, 1985, p. 446 참조.

여 통지하고 그에 대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한 이후 재량적으로 지배 관계를 판정할 수 있다.<sup>85)</sup> 그러나 은행지주회사법은 보유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 확정적으로 지배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5%와 25% 사이에서는 연방준비이사회가 이를 재량적으로 판단하며, 5% 미만인 경우에는 비지배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sup>86)</sup> 따라서 지배관계를 판단하는 범위가 보험지주회사법이 은행지주회사법보다는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87)</sup>

보험지주회사가 되려고 하는 자, 즉 인수자가 보험회사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자를 지배하려는 자는 관련정보를 인수 대상보험회사와 당해 보험회사가 설립 등록된 주의 보험감독관에게 60일 이전에 등록하고, 보험감독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sup>88)</sup> 이때 보험감독관은 청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험감독관은 ① 인수자 및 인수대상 보험회사의 재무 상황; ② 인수자의 신뢰도; ③ 인수 이후의 회사운영계획; ④ 인수자금의 원천; ⑤ 인수가격의 공정성; ⑥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 ⑦ 보험계약자 또는 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sup>89)</sup> 결국 보험지주회사는 사전승인 절차를 통한 적격성 심

---

85) NAIC 440-1 §1C.

86) 12 U.S.C. §1841(a)(3).

87) Joanne M. Derrig, *Insurance Holding Company Law With Its Federal Banking Law Counterparts*,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3, No. 4, 1985, p. 459 참조. 한편, 보험지주회사법은 관계자(affiliated person)의 개념 속에 개인 및 이들의 공동행위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 및 가족의 보험회사 지배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NAIC 440-1 §1F. [Person] A “person” is an individual, a corporation, a limited liability company, a partnership, an association, a joint stock company, a trust, an unincorporated organization, any similar entity or any combination of the foregoing acting in concert, but shall not include any joint venture partnership exclusively engaged in owning, managing, leasing or developing real or tangible property. *Ibid.*

88) NAIC 440-1 §3A.

89) NAIC 440-1 §3D. 일반적으로 인수자(또는 그 이사 및 경영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거나 경쟁제한성이 입증되면 승인을 거부한다. 보다 자세한 경쟁제한성 판정의 기준은 NAIC 440-1 §3.1을 참조



사만을 거쳐 설립될 수 있으며, 은행지주회사와는 달리<sup>90)</sup> 그 업무영역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나타낸다.<sup>91)</sup>

보험지주회사는 그 설립이후 15일 이내 회사의 중요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당해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sup>92)</sup> 회사의 중요 정보로는 ① 보험회사와 그 지배자의 자본구성, 재무상황, 소유구조 및 경영진; ② 보험지주회사체계에 속한 모든 회사의 상호 및 관계; ③ 지난 1년간 보험회사와 관계회사 사이의 모든 계약 및 거래내역; ④ 관계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보험회사, 그 자회사 및 그 지배회사의 주식내역; ⑤ 보험감독관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보험회사와 관계회사간의 거래내역 등 매우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된다.<sup>93)</sup> 이렇듯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은 보험지주회사로 하여금 포괄적인 회사의 중요정보를 등록 및 공시토록 강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보험회사는 그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주회사에 편입된 사실과 설립허가서 또는 회사 정관 및 세칙 사본, 주요주주, 임원, 이사, 지배회사, 자본구조, 재무상태, 주요사업 등에 관한 주요 정보 등을 보험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up>94)</sup>

90) 반면, 은행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의 업무영역을 아주 엄격하게 사전 규제한다. 은행지주회사가 새로운 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U.S.C. §1843(c); 12 U.S.C. §1843(a)(2), (c)(8) 참조.

91) 김상조, 앞의 논문, 16쪽.

92) NAIC 440-1 §4A.

93) NAIC 440-1 §4B. 특히 보험감독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판매, 구매, 교환, 대출, 신용공여, 투자, 지급보증 등의 거래관계가 전년도 말 기준 적격자산의 0.5% 이상에 해당하면 중요 정보로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0.5%보다 더욱 엄격한 중요성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NAIC 440-1 §4D 참조. 한편, 연방준비이사회 역시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i) 재무상황, 재무위험 및 운영위험을 감시·통제하는 시스템, 그리고 예금기관 자회사와의 거래 내역, ii) 법령 준수 상황 등을 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대해 보고토록 하고 있다. 12 U.S.C. §1844(c)(1)(A).

94) 뉴욕 주 보험법 §1501(a).

## 제 2 절 E U

### I. EU의 복합금융그룹체제

#### 1. 금융복합그룹지침

EU에서 실제 금융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금융복합그룹체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복합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각각 다른 영역에서의 상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복합그룹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복합금융그룹 내의 신용기관, 보험회사, 투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12월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EU 지침(EU Financial Conglomerates Directive)<sup>95)</sup>이 마련되었다.<sup>96)</sup>

---

95) Directive 2002/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2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and Directives 98/78/EC and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96) 복합금융그룹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결합형 금융업이 주요한 사업이라면, 복합금융그룹의 신용기관, 보험회사, 투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은 모든 복합그룹에 적용된다. 이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경우를 말한다. 추가적인 감독은 금융관련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모든 금융활동에 적용되며, 자산관리회사를 비롯해서 그러한 활동이 주된 업무인 금융기관은 이에 포함된다.
- 전체 대차대조표상 금융 분야의 자산이 최소 60억 유로를 초과한다면 이를 주요한 결합형 금융업이라고 간주하고, 복합금융그룹으로 인정한다.
- 이 지침에 따라 관계당국은 규제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모든 복합금융그룹은 조정자를 두며, 이 조정자는 복합금융그룹으로부터 관계당국과의 업무를 위임받는다. 조정자는 복합금융그룹으로 확인된 그룹의 모회사의 상당업무를 한다.
- 관계당국은 복합금융그룹의 신용기관, 보험회사, 투자회사의 재무상황을, 특히 지불능력, 리스크집중, 그룹내부거래에 관하여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지침은 규제대상의 자본적정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이 지침은 추가적인 감독의 책임이 있는 당국 간의 협력증진과 정보교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유럽공동체 내에 본점을 둔 신용기관, 보험회사, 투자회사는 유럽공동체 외에 있

따라서 EU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제도에 대해 특별히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sup>97)</sup>

다만, 보험전문그룹으로서 보험지주회사는 존재하고 있으며 보험지주회사의 역내시장에서의 통일적 규제를 위하여 ‘보험지주회사의 감독에 관한 지침’<sup>98)</sup>을 발령하였다. 동 지침은 유럽 보험지주회사 감독의 기반으로 기능하게 되었는데, 전문(前文)을 통해 동 지침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지주회사는 최소 1개 이상의 보험업(재보험 및 비회원국 소속 보험사 포함)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여야 한다.(제2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이와 같은 보험그룹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역별 규제, 즉 보험업에 대한 규제 외에도 동 지침에 따라 보험금융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규제를 받게 된다. 그 구체적인 감독규제의 대상은 보험그룹내의 자회사, 보험

---

는 복합금융그룹에 속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제대상은 이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조정의 승인을 요하며, 이 조정은 지침의 규정과 유사한 목적 및 결과를 요하는 추가적인 감독상의 조정을 뜻한다.

- 부칙과 같은 시행에 필요한 상세조항은 유럽위원회의 공동입법절차(comitology)에 의해 제·개정된다. 이 시행조항의 제·개정 위임은 이 지침의 효력이 발생한 후 4년간 유예되고, 상원회의 제안으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4년간 제·개정된 시행조항의 효력은 없다.

- 복합금융그룹의 신용기관, 보험회사, 투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 사항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신용 부문에 규정한다. 상세한 사항은 국제 기준상 보장된 경쟁평등 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유럽연합 기준에서는 인용하지 못한다. 자본금에 관한 Basel II(신BIS협약) 및 각각의 유럽연합 규정은 복합금융그룹지침을 채택한 날에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형식, 내용, 시기의 유사성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97) 이를 두고 표현상에 있어서 유럽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이며, 단지 소유에 대한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가 없다는 것 뿐이지 여전히 자산운용규제 및 회사법상의 신인의무 등을 통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이 역시 지주회사 규제에 포함된다는 입장이 있다. 김석연, “금융위기와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싼 담론의 문제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보고서, 2008, 12, 6쪽.

98) Directive 98/7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 1998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insurance undertakings in an insurance group

지주회사, 보험그룹내의 자회사와 보험지주회사의 관계회사(related Undertaking)가 된다(제3조 제3항).

보험그룹이 받게 되는 추가적인 감독은 그룹 내에서의 거래 (Intra-group transaction)와 적정한 필요자기자본(지급여력)의 규제이다. (제8조, 제9조) 여기에서 그룹 내에서의 거래는 대출, 보증, 부외거래, 투자, 재보험활동, 비용의 공동부담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필요자기 자본규제의 경우 자회사와 모회사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룹효과(Groupe Effect)를 제거<sup>99)</sup>한 당해 회사 자체의 필요자기자본의 유지를 의미한다.

한편 동 지침은 보험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각 회원국 간의 정보의 교환과 감독공조 등에 대한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2. 보험지주회사 현황<sup>100)</sup>

유럽의 경우 주요한 보험회사들은 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독일의 알리안츠(Allianz), 프랑스의 악사(AXA), 영국의 에이비바(Aviva)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의 지주회사 아래 많은 형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들 그룹들은 보험지주회사 아래 은행까지 자회사로 두고 있다.<sup>101)</sup> 독일 알리안츠를 예로 들 경우, 알리안츠 SE를 지주회사로 하고 그 밑에 알리안츠 독일 (Allianz Deutschland)이라는 보험지주회사, 전 유럽국가에 소재하는 지역 지주회사, 드레스드너 뱅크, 각국의 보험자회사, 알리안츠 글로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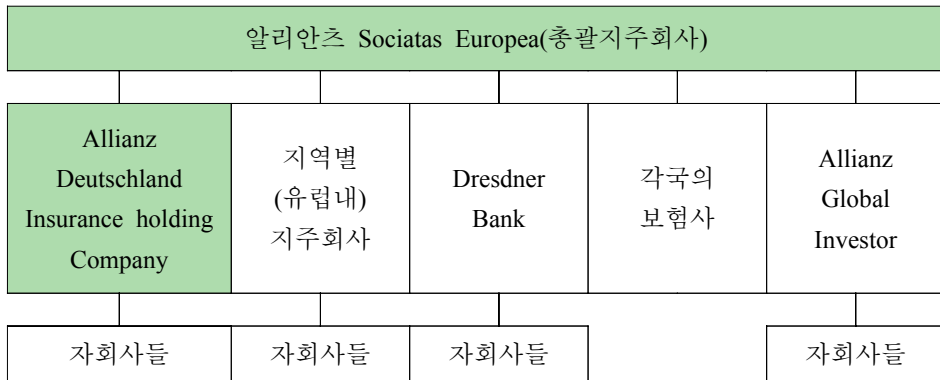
99) Elimination of double use of solvency margin elements & Elimination of the intra-group creation of capital in Directive 98/78/EC Annex I, C, D

100) 최승필, “유럽의 보험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9. 3. 20, 83-84쪽 전개함.

101)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이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인베스터라는 자산운용사를 두고 있다. 이중에서 보험지주회사인 알리안츠 독일과 지역지주회사, 알리안츠 자산운용사는 또 하나의 지주회사로 그 휘하에 다시 자회사를 두고 있는 다층적 지주회사 구조이다.

<그림 - 3> 알리안츠 SE의 다층화 지주회사 구조



<표 - 11> 알리안츠 SE의 주요 자회사와 지분구조(지역기준 : 독일)

회사명	자본금 (백만유로)	지분비율(%) 102)
Allianz Capital Partners 경영지원 유한, 뮌헨	685	100.0
Allianz Dresdner 건설공제 주식, 바트비벨	99	100.0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주식, 뮌헨	778	100.0
Allianz Investor Advisory 유한, 프랑크푸르트	3	100.0
Allianz Global Investor, 뮌헨	2,592	100.0
Allianz Global Investor Europe, 뮌헨	17	100.0

회사명	자본금 (백만유로)	지분비율(% 102)
Allianz Lebensversicherung, 주식, 슈투트가르트	1,456	94.8
Allianz Versicherung, 주식, 뮌헨	2,512	100.0
Deutsche Lebensversicherung, 베를린	45	100.0
Drsdner Bank, 주식, 프랑크푸르트	8,674	100.0
E.H Kreditversicherung, 주식, 함부르크	246	100.0
M.M. Agraversicherung, 올덴부르크	289	59.9
Oldenburgische Landesbank 주식, 올덴부르크	531	89.4
Vereinte Spezial Versicherung, 뮌헨	45	100.0

자료 : Allianz Group Annual Report 2007

유럽의 이와 같은 지주회사 형태는 전통적으로 유럽이 유니버설 뱅킹(Universal Banking)제도를 채택해 온 것과 유럽 경제통합에 따른 전 유럽적 경영전략에 기인하며, 회사법상의 일반적인 규제 외에 금융지주회사의 타회사 주식소유를 비롯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규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기인한다. 아울러 지주회사 내에서도 유럽의 경우 순수지주회사나 사업지주회사나에 따른 구분상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sup>102)</sup>

한편 일반적으로 보험지주회사들은 순수지주회사 아래 생보사와 손보사를 그 자회사로 두면서 영업을 영위하는 반면, 독일의 알리안츠의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 자산운용사인 Allianz Global Investors를 두

102)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간의 지분상호소유분까지를 포함한 지분을

103) 안철경, 손해보험, 2008 March, 15면

고 그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그룹 내의 일부 자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sup>104)</sup>

## II.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

### 1. 금융복합그룹 감독의 목적

유럽의 경우 보험사가 자회사로서 금융 및 비금융 자회사를 규제하는 데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음을 살펴보았다. 대신 유럽의 경우 겸업화에 따른 위험의 전이 방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감독규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sup>105)</sup> 특히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의 주안점은 그룹전체를 기준으로 한 지급여력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그룹 내 거래로 인한 내부 리스크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유럽연합차원에서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에는 유럽전체에 자회사를 둔 소위 유럽회사<sup>106)</sup>중 하나가 파산위험에 직면할 경우 단일통화시장 전체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복합그룹 감독 중시현상은 최근 영국의 RBS 사건 이후 복합그룹내 한 계열사의 위험발생이 계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러한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복합된 금융그룹 내에서는 그룹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빈번히

104) 안경철, 전계서, 17면

105) 이를 두고 표현상에 있어서 유럽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이며, 단지 소유에 대한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가 없다는 것 뿐이지 여전히 자산운용규제 및 회사법상의 신인의무 등을 통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이 역시 지주회사 규제에 포함된다는 입장이 있다. 김석연, 금융위기와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싼 담론의 문제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보고서, 2008, 12, 6면 참조

106) 최근 이러한 금융복합그룹의 지주회사의 경우 S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는 Societas Europea의 줄임말로써 유럽단일금융시장에서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회사를 대상으로 붙이는 용어이다. 알리안츠의 경우에도 Allianz SE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서의 시스템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유럽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경우는 설립규제보다는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규제의 틀은 전술한 바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만약 보험지주회사가 보험회사들로만 자회사를 구성하  
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그룹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가 적  
용되게 되며, 보험지주회사가 자회사로서 이종의 금융서비스기관을  
두고 있을 경우에는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규율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유럽의 많은 회사들이 이종 금융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금융복합그룹의  
형태를 띠고 있다.

## 2.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형태와 방식<sup>107)</sup>

유럽의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은 유럽 경제금융위원회(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에서 제정한 금융복합그룹지침을 기반으로 하  
고 있으며, 동 지침은 그룹 전체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 집중, 내부거  
래, 경영진에 대한 요건 및 내부리스크 관리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다.

### (1) 금융복합그룹의 조건

금융복합그룹에 속하는 그룹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금융지주회사는 모회사 또는 1개 이상의 자회사가 기존 업역별  
감독지침에 따라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은행, 증권 또는 보험)를 최소  
한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여야 한다.(제2조 제3항) 둘째, 최상  
위에 있는 모회사가 비규제 대상인 경우에는 금융부분의 대차대조표

---

107) 최승필, 앞의 자료집, 90-95쪽 전거함.



를 기준으로 하여 금융업의 영역의 자산이 전체 대차대조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이상을 넘어야 한다.(제3조 1항). 셋째, 각 업역별로는 해당 금융그룹의 전체 대차대조표에서 각 업역별 금융자회사의 총 자산 및 필요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이상을 넘어야 하며, 가장 소규모의 금융업의 경우에도 자산규모가 60억 유로를 넘어야 한다.(제3조 제2항). 넷째, 그룹이 1개 이상의 보험업 관련회사 및 1개 이상의 은행 또는 증권부분의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야 한다.(제2조 제14항) 이는 회사설립에 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예컨대 독일의 준척주의나 영국의 자유주의 하에서 비금융업종과의 결합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비록 모자회사의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상호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금융그룹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2조 제9항, 제2조 제12항)

한편, 이러한 기준들을 연속되는 3년 동안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다.(제3조 제4항 제6항) 이는 급격한 지배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기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금융복합그룹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그룹에 관한 지침이 의도한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준들 이외에도 수익구조, 부외거래활동 등을 포괄하여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을 판단할 수 있다.(제3조 제5항)

## (2) 금융복합그룹감독규정의 적용대상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은 금융복합그룹이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가 영업하는 각 업역별 감독을 받음과 동시에 금융복합그룹으로서 별도의 추가적인 감독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감독대상기관은 유럽의 금융시장 감독시스템이 국지감독, 즉 모국감독(National

Supervision)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에 따라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해당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된다. 만약 알리안츠 그룹의 경우와 같이 금융복합그룹 내에 또 다른 업역별 금융그룹, 즉 지주회사가 존재할 경우 회원국가는 이를 금융복합그룹의 형태로 판단하여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결국, 유럽에 있어서 금융복합그룹에 속해 있는 각 업역별 금융기관은 각 업역별 금융기관은 기존의 업역별 감독(108), 금융복합그룹감독을 받게 되며(109), 만약 다층화된 구조하에서 복합그룹내에 또 다른 동종 금융그룹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독규정 역시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지분참가나 자본참가가 복합금융지주회사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부회사의 참가가 해당 그룹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들 회사의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금융복합그룹의 감독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5조 4항) 이에 대한 판단은 금융당국의 판단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3)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에 대한 통제

금융복합그룹의 경우 해당 그룹 내의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적정성에 대한 통제를 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금융복합그룹 차원에서의 연결재무제표를 통한 자본적정성의 통제는 그룹효과를 제거하고 각 업역별 기준에 따라 자회사, 즉 개별 회사의 자본적정성을 포괄함은 물론이다.(제6조 제4항). 연결된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는 연결회사 상호간의 채권·채무와 내부적인 매입과 매출을 상쇄하고(Intra-group transaction, 제8조) 아울러 모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자회사의 자본계정이 상쇄되는 차감과 종합의 과정을 거

108) 은행, 증권, 보험 등에 관한 업역별 규제에 대해서는 최승필, 유럽에 있어서 금융행정으로서의 금융규제체제, 유럽헌법연구, 제4호, 2008.12, 171-178쪽 참조.

109) 안경철/이상우,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 2006, 111쪽.

쳐 순수한 형태의 항목만을 계상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자본적정성의 통제 및 관리는 향후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제가 이루어져 한다.(제9조 제2항(b))

#### (4) 위험의 집중(Risk Concentration)에 대한 통제

위험의 집중에 대한 통제는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차원에서 리스크 평가를 통하여 사전에 리스크의 확대가능성을 차단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제7조) 이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Risk-Based Regulation)의 일환으로 비록 재무제표상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 할지라도 판매 내지는 운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고도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거나 대출채권 혹은 투자채권의 신용도 급락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을 감안한 감독방식으로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이다.

위험에 대한 통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확충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지침은 제9조를 통하여 내부통제시스템과 리스크통제절차(Internal control mechanisms and risk management processes)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금융복합그룹 전체 차원 즉 최고 지주회사차원에서의 내부통제활동과 리스크 통제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체계의 확립, 둘째, 자본적정성의 통제정책과의 조화, 셋째, 지주회사 전체차원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충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제9조 제2항)

## 제 3 절 독 일

### I. 보험지주회사 관련 금융규제의 원칙

#### 1. 금융규제의 원칙

독일은 전통적으로 산업에 대한 은행의 지배력이 강하고, 산업지주회사 주식의 많은 부분을 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사업회사 주식을 은행이 보유하는 것에 대한 규제도 없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비은행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제조회사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겸업과 관련하여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당해 회사가 은행, 증권, 투자업을 동시에 영위가 가능하다. 단, 보험회사가 동시에 타 업역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sup>110)</sup>하고 있어, 이를 회피하기 수단으로 복합지주회사를 통해 보험업 이외의 타영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sup>111)</sup>

따라서 독일에서는 은행법(Kreditwesengesetz), 보험감독법(Versicherungsaufsichtsgesetz) 외에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일반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법률적으로 특별히 금융지주회사를 정의하거나 이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융지주회사란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회사를 전부 또는 주된 자회로 보유하는 금융관련회사로서 자회사 중 적어도 하나는 예금과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12)</sup>

한편,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은 시장지배적인 상황을 형성 또는 강화하는 것이 예상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타사의 주식

110) 독일보험감독법(VAG) 제6조(영업허가범위), 제7조(비보험업영위시의 회사의 법적형태) 참조

111) 최승필, 앞의 논문, 82쪽.

112) 진삼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8. 12. 19, 7쪽 이하 참조.

을 25%이상 넘어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으로서 연방 카르텔청(Bundes Kartellamt)의 규제대상이 된다. 단, 예외적으로 해당 결합으로 인하여 경쟁상황이 개선되어 이러한 개선이 시장의 폐해보다 크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는 예외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sup>113)</sup>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 유사한 입법형태로 보험감독법(Versicherungsaufsichtsgesetz)<sup>114)</sup>을 두고 있으며, 2004년 개정을 통하여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감독규정을 도입하였다.

## 2. 보험감독법상 보험지주회사의 개념

보험감독법은 제1b조에서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서 보험지주회사란 “주된 영업 및 직접 또는 간접적인 출자의 행태가 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 혹은 연기금인 것으로써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지배를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동 규정의 의미에서 보험지주회사로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규정에 해당되는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연방금융감독청(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이하 ‘BaFin’이라 함)의 감독대상이 된다.

## II.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 1. 보험감독법상 감독규정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내용은 보험감독법 제1b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BaFin의 감독대상이 되는 보험지주

113) 이우광,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외국의 운용사례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6, 7쪽.

114) 이 법의 전문은 <http://www.versicherungsgesetze.de/versicherungsaufsichtsgesetz/> 참조

회사를 확정하고,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자가 신뢰할 만한 자일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보험지주회사는 매년 중요 출자자 및 출자범위를 BaFin에 신고하도록 하였다.<sup>115)</sup>

이에 따라 보험감독은 BaFin에서 실시하는 연방 차원의 감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 주에서만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는 주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sup>116)</sup>

또한, 제83조에 따른 BaFin의 광범위한 권한은 보험지주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BaFin은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집행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장소에 관한 감사를 이행할 수 있고, 수색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사례에서, 어느 범위까지 보험지주회사에 개입권한의 적용이 충분한 가, 그리고 감독청의 제한된 감독위임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에 논란이 있다.<sup>117)</sup>

## 2. 보험감독의 강화

### (1) 보험감독법의 개정

독일 BaFin은 금융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09년 3월 보험감독법을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직접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만 보험감독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보험사업 영위와 상관없이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있는

---

115)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보험감독법 제13d조 제4호 참조.

116) 현재 대형 보험회사 626개사 및 연금기금은 BaFin의 감독을 받고, 소형 보험회사 917개사는 주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김지은, “최근 독일 보험감독 정책변화 및 시사점”, 조사연구 Rewiew 제27호, 금융감독원, 2009. 9, 9쪽.

117) 보험감독법상 감독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주선, “독일의 금융규제 현황과 보험지주회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09. 9. 25, 37쪽 이하 참조.

그룹의 지주회사를 보험감독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그룹전체의 신용공여 10%이상이 동일한 투자대상에 집중된 경우 리스크현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하였다.<sup>118)</sup>

## (2) 보험감독강화법을 통한 보험감독법 개정

보험감독법 이외에 보험지주회사의 감독과 관련하여서는 2009년 8월 1일 시행된 “금융시장 및 보험감독의 강화를 위한 법률(Gesetzes zur Stärkung der Finanzmarkt- und der Versicherungsaufsicht, 이하 ‘보험감독강화법’이라 함)”<sup>119)</sup>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률은 은행법과 보험감독법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험감독강화법은 BaFin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여, 위기시에 BaFin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BaFin이 감독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위기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금융기관, 보험회사, 보험지주회사 등에 대하여 당해 기업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sup>120)</sup>

이러한 신고의무는 보험감독법에 일부 이미 존재하는 내용이지만, 보험감독법의 규정은 한 보험기업집단 내에 속한 보험회사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반면, 보험감독강화법에서는 이러한 신고의무를 확대하여, 한 보험집단에 속한 자회사들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금융기관 등의 경영이사에게만 요구하던 자격요건을 감독이사회 이사에게도 부과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만이 금융기관 등의 감독이사회 이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sup>121)</sup>

118) 김지은, 앞의 보고서, 13쪽.

119) 이 법의 전문은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nr\\_4328/DE/BMF\\_\\_Startseite/Aktuelles/Aktuelle\\_Gesetze/Gesetzentwuerfe\\_Arbeitsfassungen/Entw\\_\\_Finanzmarktaufsicht\\_\\_anl,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nr_4328/DE/BMF__Startseite/Aktuelles/Aktuelle_Gesetze/Gesetzentwuerfe_Arbeitsfassungen/Entw__Finanzmarktaufsicht__anl,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 참조

120) 특히, 일정 규모를 넘는 대출, 투자, 보증의 제공 및 주식이나 자본과 관련된 거래 등이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121) [http://www.yulchon.com/mail/200908/overseas/YC\\_sub15.html](http://www.yulchon.com/mail/200908/overseas/YC_sub15.html)

## 제 4 절 영 국

### I. 보험지주회사 관련 규제

200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 제1159조 (1)항에서 지주회사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과반수의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권한을 갖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청의 감독편람(Handbook)에 따르면 보험지주회사(Insurance Holding Company)는 자회사의 취득과 보유가 주목적인 회사로서, ① 자회사가 전속적으로 또는 주된 사업이 보험업이거나, ② 자회사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회사가 영국법상 보험자 또는 EEC협약상 보험회사로 규율되고, ③ 혼합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사를 의미한다.<sup>122)</sup>

금융서비스시장법에 의할 경우 은행업과 증권업간에는 업무장벽이 없으나 보험업은 보험회사만 영위할 수 있다. 때문에 금융감독청의 감독편람(Handbook)은 은행(Banks),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 투자법인(Investment Firms)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편람과 보험회사(Insurers)를 대상으로 하는 감독편람으로 나누어져 있다.<sup>123)</sup> 따라서 은

122) <http://fsahandbook.info/FSA/html/handbook/Glossary/I> (FSA 홈페이지 Glossary).

Insurance holding company means a parent undertaking whose main business is to acquire and hold participations in subsidiary undertakings, where:

- (a) those subsidiary undertakings are exclusively or mainly insurance undertakings;
- (b) at least one of those subsidiary undertakings is a UK insurer or an EEA firm that is a regulated insurance entity; and
- (c) it is not a mixed financial holding company.

; 박영준, “영국의 금융규제현황과 보험지주회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9. 9. 25, 92쪽 재인용.

123) 예컨대 건전성(Prudential)에 관한 관리편람을 보면 『Prudential sourcebook for Banks, Building Societies and Investment Firms』과 『Prudential sourcebook for Insurers』



행, 주택금융조합, 투자법인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보험지주회사는 서로 구분하여 규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독편람에서는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정의규정은 가지고 있다.<sup>124)</sup>

그 외에 다른 법에서 구체적으로 보험지주회사 등 금융지주회사의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2001년 12월에 시행된 금융시장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별도의 설립 및 행위규제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영국에서의 보험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II.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금융감독청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별도로 감독·검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에 대한 인가권 행사에 의하여 지주회사 관련정보를 획득하거나 연결기준(on a consolidated basis)의 감독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주회사를 감독한다. 예컨대 은행의 발행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청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사후신고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연결기준에 의한 자기자본규제를 제외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지주회사보다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이 보다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인가권 행사 등을 통하여 일정한 보고서를 징구하거나 연결기준 감독권의 행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영국 금융 당국의 책임은 1997년에 은행 감독권한이 영란은행에서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으로 나누어져 있다. 박영준, “영국의 금융규제현황과 보험지주회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9. 9. 25, 93쪽.

124) 박영준, 앞의 논문, 93쪽.

; FSA)로 이전되었고, 금융서비스시장법 시행이후에는 금융감독청이 은행, 보험, 투자회사를 모두 감독하게 되었다.<sup>125)</sup>

금융서비스시장법이 적용되는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그 밖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FSA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지주회사의 근거규정은 보험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인가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적용대상은 규제대상행위(regulated activities)가 되는데, 규제대상행위는 금융서비스시장법 제22조에서 “특정행위로서 특정투자자와 관련되는 행위”, 또는 “일정한 특정행위의 경우, 모든 종류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영위되는 행위”<sup>126)</sup>를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금융서비스시장법 제22조 제1항과 제5항은 여기에서의 ‘특정행위’ 및 ‘특정투자’의 유형을 지정할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특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금융행위는 금융서비스시장법 부속서 2에 예시되어 있다. 재무부에서는 수권된 권한에 따라 ‘특정행위’와 ‘특정투자’를 지정하는 ‘규제대상행위령’<sup>127)</sup>을 발하였는데, 구체적인 ‘특정행위’는 제2장에서 “예금의 수취,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행, 본인의 투자거래, 대리인의 투자거래, 투자의 중개, 투자의 운용, 투자의 보호 및 관리, 타인을 위한 증권관련 지시의 발송, 집합투자상품관련 행위, 투자자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투자’는 “예금, 보험계약, 주식 등 지분, 사채 및 CD 등 채무증서, 국채·공공채, 집합투자상품의 지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28)</sup>

---

125) 박영준, 앞의 자료집, 94쪽.

126) 집합적 투자기구와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127)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 SI 2001/544

128) 박영준, 앞의 자료집, 84쪽.

다만, 금융서비스시장법은 규제대상행위에 대한 허가절차를 제4편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6에서 각 규제대상행위 신청에 필요한 법적 자격, 영국 내 영업소 소재 요건, 특수관계에 대한 규제권, 자본의 적정성, 적격성 등 허가의 필수조건을 정하고 있다.

영국 공정거래법은 순수지주회사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64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주식취득 후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일 경우, 혹은 양도자산이 7,000만 파운드를 넘을 경우, 독점·합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sup>129)</sup>

## 제 5 절 일 본

### I. 지주회사제도의 허용

#### 1. 지주회사제도의 배경

일본에서는 전후 해체된 재벌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1947년에 제정된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sup>130)</sup>(이하 “독점금지법”이라 함)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1997년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순수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였다.<sup>131)</sup>

129) 이우광, 앞의 논문, 7쪽.

130) 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131) 다만,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는 금지”(제9조)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된다”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회사의 유형을 ①회사 및 그 자회사 기타 해당회사가 주식 소유에 의해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국내 회사의 종합적 사업규모가 상당수 사업분야에 걸쳐서 현저하게 큰 경우(제 1유형), ②이러한 회사의 자금에 관련한 거래에 기인한 다른 사업자에게 대한 영향력이 현저하게 큰 경우(제2유형), 또 ③이러한 회사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있어서 각각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

순수지주회사의 허용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관련업법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1998년 3월 「지주회사의 설립 등 금지의 해제에 수반한 금융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과 「은행지주회사의 창설을 위한 은행 등에 관한 합병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한편, 1998년 6월에는 보험업법을 포함한 24개 금융관련 법안의 개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었던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각 금융사업법들의 개정에 따라 자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겸업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1998년 12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상호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금융지주회사는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이 단일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업종별 사업법에서 지주회사제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법」제2조 제13항에서 규정하는 ‘은행지주회사’, 「장기신용은행법」제16조의 4에서 규정하는 ‘장기신용은행지주회사’, 「보험업법」제2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보험지주회사’를 실무상 통칭하여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 2. 지주회사의 의의

지주회사의 의의는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지주회사를 총자산액에 대한 자회사(회사가 그 총주주의결권의 과반수를 갖는 다른 국내회사를 말한다)의 주식취득가액(최종 대차대조표에서 따로 붙인 가액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

---

(제3유형) 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회사가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을 방해할 경우 금지 대상이 된다(독점금지법 제9조 제3항).

의 50을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제9조 제5항 제1호), 이러한 지주회사 가운데 당해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총자산액이 6천억 엔을 넘는 경우에는 당해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점금지법은 은행의 과도한 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은행지주회사는 일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또한 주식소유 규제를 통해 금융기관의 일반기업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sup>132)</sup> 은행주식 소유에 대한 은행법상 제한은 없으나, 독점금지법은 경제력 집중 및 방지 차원에서 일반회사 및 개인이 다른 국내회사(금융회사 포함)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 및 소유를 금지한다(독점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인가한 경우 은행지분 5% 초과 보유시 신고하도록 하고, 20% 초과 보유시에는 사전승인을 요구한다(은행법 제3조의2, 제52조의2 제1항, 52조의9 제1항).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한도는 은행의 경우 5%, 보험회사의 경우 10% 이내로 제한된다(독점금지법 제11조). 또한 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일반사업회사 주식소유 한도가 15% 이내로 제한받는다(은행법 제52조의24 제1항).

## II. 보험지주회사 현황

도쿄해상홀딩스 주식회사(모회사)는 도쿄해상니치도 화재보험주식회사를 비롯한 자회사 184개사 및 관련 회사 22개사로 구성되며, 손해보험사업(손해보험업, 손해보험관련사업, 금융·자산운용관련사업, 총무·사무대행관련사업을 포함)등을 경영하고 있다.<sup>133)</sup>

132) 이 때 은행지주회사는 은행, 증권, 신용카드, 리스, 벤처캐피탈, 벤처 비즈니스에 관련된 회사 등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는 없다.

133) [http://www.tokiomarine-nichido.co.jp/world/pdf/TMNF\\_2008\\_d.pdf](http://www.tokiomarine-nichido.co.jp/world/pdf/TMNF_2008_d.pdf)

Sony Financial Holdings의 경우를 보면, 소니생명,<sup>134)</sup> 소니손해보험,<sup>135)</sup> 소니은행<sup>136)</sup>으로 구성되고 있다.<sup>137)</sup>

T&D Holdings의 경우 2007년 1월 일본 패밀리 보험기획(주)(현 애완용 동물&패밀리 소액단기보험(주))을 자회사로 하였으며, 동년 3월에는 T&D아세트매니지먼트(주)를 자회사로 하였다.<sup>138)</sup>

AXA Holdings Japan의 자회사 구성을 보면, 생명보험 분야 자회사로 AXA 생명보험 주식회사, AXA 파이낸셜 생명보험 주식회사, SBI AXA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손해보험 분야 자회사로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 AXA수납 서비스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부동산투자 고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sup>139)</sup>

2007년 8월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미쓰이스미토모 보험그룹 홀딩스(Mitsui Sumitomo Insurance Group Holdings, Inc.)는<sup>140)</sup> 손해보험사업분야에 손해보험사업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미쓰이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를 두고 있으며, 생명보험사업 분야에 미쓰이스미토모해상생명보험주식회사, 미쓰이스미토모 해상메트라이프 생명보험지주회사를 두고 있고, 이 외에도 해외사업이나 금융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sup>141)</sup>

---

134) 2007년 3월 31일 현재 소니 파이낸셜홀딩스 주식회사 소유주식수 65,000천 주 비율 100%,

<http://www.sonylife.co.jp/company/corporate/disclosure/files/07data.pdf>

135) 2008년 7월 1일 현재 소니 파이낸셜홀딩스 주식회사 소유주식수 40만주 비율 100%,

[http://www.sonysonpo.co.jp/pdf/ar\\_21\\_2008.pdf](http://www.sonysonpo.co.jp/pdf/ar_21_2008.pdf)

136) 2008년 12월 1일 현재 소니 파이낸셜홀딩스 주식회사 62만주 비율 100%,  
[http://sonybank.net/pdf/disclosure2008h\\_1.pdf](http://sonybank.net/pdf/disclosure2008h_1.pdf)

137) [http://www.sonyfh.co.jp/ja/company/data/governance\\_report.pdf](http://www.sonyfh.co.jp/ja/company/data/governance_report.pdf), 10쪽 도표참조.

138) 2008년 4월1일 현재 자회사, 관련회사 현황은

<http://www.td-holdings.co.jp/group/subsidiaries/> 참조

139) [http://www.axa.co.jp/holding/annual\\_pdf/pdf2008/AJH11.pdf](http://www.axa.co.jp/holding/annual_pdf/pdf2008/AJH11.pdf)

140) <http://www.msig.com/about/index.html>

141) <http://www.msig.com/about/operation/index.html#pagetop>

### Ⅲ. 보험지주회사 관련 규제<sup>142)</sup>

#### 1. 의 의

보험지주회사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지주회사는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총리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보험업법 제2조 제16항), 여기에서 보험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여야 한다. 이는 보험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보험회사 등의 경영관리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것이지만, 그 회사가 다른 사업을 행하고 있다면 보험회사의 주요주주에 관련된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경영관리에 대한 보험업법상 별다른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지주회사가 자회사 경영정책을 확정하고 주주권 행사로써 선임한 자회사 이사에게 업무를 집행시키는 등 보험회사를 포함한 자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험지주회사는 업무를 경영함에 있어서, 자회사인 보험회사 업무의 건전성 또는 적절성을 갖도록 이바지하여야 한다(동조 2항). 또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업무를 충분히 배려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보험지주회사가 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은행법상 은행지주회사, 장기신용은행법상 장기신용은행지주회사가 됨에 따라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즉, 은행지주회사 규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의 규정이 우선적용 되는 것으로,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게 되는 것이다(보험업법 제271조의 22).

142) 성승제, “일본의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동향”, 『주요국의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동향과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9. 3. 20, 44쪽 이하를 재구성하였음.

결국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범위와 은행지주회사 및 장기신용은행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것이다. 보험지주회사는 총리의 승인에 따라 일반사업회사도 자회사로 둘 수 있지만, 은행지주회사와 장기신용은행지주회사는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보험지주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게 된다.

## 2. 자회사의 범위

### (1) 금융계열 자회사

보험지주회사가 둘 수 있는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둘 수 있는 회사의 범위(보험업법 제106조 1항)와 같다. 예컨대, ① 생명보험회사(1호), 손해보험회사(2호), 소액단기보험업자(2호의2), ② 은행(3호), 단기신용은행(4호), ③ 증권전문회사(5호), 증권중개전문회사(6호), ④ 신탁전문회사(7호), ⑤ 보험업을 행하는 외국의 회사(8호), 은행업을 경영하는 외국의 회사(9호), 증권업을 경영하는 외국의 회사(10호), 신탁업을 경영하는 외국의 회사(11호), ⑥ 종속업무<sup>143)</sup> 또는 금융관련업무(법 제106조 제2항 제1·2호)를 전속적으로 경영하는 회사(12호) 등이 해당된다(법 제272조의22 제1항).

---

143) 다만 종속업무를 경영하는 회사는 주로 ① 당해보험지주회사, ② 그 자회사인 보험회사, 소액단기보험업자 또는 보험업을 행하는 외국의 회사, ③ 당해보험지주회사의 보험지주회사집단(당해보험지주회사의 2이상의 자회사의 집단 또는 당해보험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집단 중에 보험회사는 소액단기보험업자 및 보험업을 행하는 외국의 회사를 포함한다), ④ 당해보험지주회사의 보험지주회사집단 및 보험회사(당해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 제외) 혹은 그 보험회사집단 혹은 보험지주회사집단 또는 다른 보험지주회사의 보험지주회사집단이 행하는 업무를 위하여 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법 제271조의22 제1항 제12호, 규칙 제210조의7 제1항).



## (2) 비금융 자회사

보험지주회사는 금융계열 자회사 이외에도 총리 승인에 의하여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으나(보험법 제271조의22 제1항),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총리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보험지주회사가 그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됨으로써 당해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업무와 재무에 악영향이 염려되는 경우에 비금융 자회사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sup>144)</sup>

따라서 보험법 제271조의 22 제3항에서는 총리의 비금융 자회사의 승인 거부요건을 ① 당해사업의 내용이 공공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 혹은 국민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해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사회적 신용을 실추시킬 위험이 있을 때, ② 승인을 받으려는 회사의 자본금의 액,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경영의 건전성을 잃을 위험성이 크고 또한 그 경영의 건전성이 손상된 경우에는 당해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이 손상될 위험이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비금융 자회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경우가 있다. 즉, 보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담보권 실행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기타의 내각부령이 정한 사유로써 일반사업회사가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법 제271조의22 제4항). 보험지주회사 자회사의 범위에 관련된 규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 등의 결과로서 당해 일반사업회사가 자회사로 되어 버린 경우까지 사전 승인을 요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

144) 성승제, 앞의 논문, 45쪽.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회사를 계속 자회사로 두기 위하여서는, 사후적으로 총리의 승인을 요한다. 이 사후적 승인도 받지 아니하였다면, 당해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날까지는 그 회사가 자회사로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항 단서).

### 3. 보험지주회사의 인가

#### (1) 인가 요건의 의의

보험업법은 보험지주회사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려는 회사 또는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사전에 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271조의 18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려면, 총리의 인가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경영관리나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 그룹의 재무상황 등이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업무나 재산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그 적격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sup>145)</sup>

따라서 당해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의한 보험회사의 의결권 취득, 당해회사 자회사에 의한 보험업법상 보험업 면허(법 제3조 제1항)의 취득, 당해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의한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 의결권 취득 등으로,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거나 또는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보험업법 제271조의 18 동령 제37조의 5의 6)에는 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45) 安居孝啓 編著, (最新)保險業法の解説, 2006, 714頁.

#### 4. 특정지주회사

##### (1) 특정지주회사의 의의

앞서 설명한 인가를 요하지 않은 거래 또는 행위으로써,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된 회사(‘특정지주회사’라 함)는, 총리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보험업법 제271조의18 제2항).

이와 같이 특정지주회사라는 용어는 당해 사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지주회사로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것까지 사전 허가를 강요한다면 당해사유에 미리 지주회사로 되지 않도록 거래할 것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특정지주회사는 일시적으로 당해지주회사로 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총리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다만, 일정기간 내에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지 않을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 (2) 특정지주회사의 신청

특정지주회사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한 사업연도종료 후 3개월 이내에 ①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었다는 뜻, ② 당해사업과 그 시기, ③ 당해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사업의 내용, ④ 기타 금융청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총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동항, 규칙 제210조의5 제1항). 그 신청은 신청서에 ① 정관, ②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당해 특정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금융청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규칙 제210조의5 제2항).

### (3) 지주회사 지위 회피 의무

특정지주회사는, 당해사유 발생일에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날(‘유예기한일’이라 함)까지, 보험회사를 자회사라고 하는 지주회사가 되지 않도록 소정의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법 제271조의18 제3항).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뜻을 총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이 신청은 신청서에 ① 이유서, ②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아니었던 시기를 기재한 서류, ③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지 않도록 강구했던 조치 또는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청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규칙 제210조의5 제5항).

또한 애당초 거래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보험회사의 지주회사가 되었던 회사가, 보험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보험지주회사로서 경영을 관리하고 경영판단을 하는지가 고려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예기한일 이후 계속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리의 인가를 요한다(법 제271조의18 제3항 단서).

인가를 받음으로 유예기한일 이후도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음으로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 되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칙이 적용된다(법 제315조의2 제2호).

또한 총리는 상기의 인가에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법 제310조 제1항). 이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도 벌칙이 정해져 있다.

## IV.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 1. 감독규정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는, ‘보험회사 업무의 건전성과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법 제271조의28), 금융

청이 감독 및 검사권한을 수행한다. 보험지주회사는 주식보유를 통하여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로서 보험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본 금융청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포괄적으로 감독하려고 한다.<sup>146)</sup>

보험지주회사는 영업연도별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 기타 보험지주회사와 특수관계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연결기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71조의24 제1항). 총리는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입점 검사권한, 경영개선계획 제출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험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 검사권한을 행사(법 제271조의27 제1항 및 제271조의28 제3항)하고, 경영개선계획 및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법 제271조의29 제1항)(다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법 제271조의29 제2항)). 다만 보험지주회사는 일반사업회사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다(법 제271조의 27 제2항 및 제271조의28 제4항, 제271조의11 제2항).

총리는 보험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및 자회사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가 법령·약관·총리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공익상 해를 끼친 경우 그 회사의 임원 및 감사역을 해임시킬 수 있으며, 보험지주회사의 인가도 취소할 수 있다(법 제271조의18 제1항 및 3항).

## 2. 자산운용 규제

보험지주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보험지주회사 그룹에서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sup>146)</sup> 前掲 安居孝啓 編著, 733頁.

가 없으며, 다만 개별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동일인 운용한도 규정이 적용된다(법 제97조의2, 규칙 제47~제48조의5). 신용공여한도는 동일인 자신 및 동일인(동일인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경우 총자산의 10%, 보험회사 주요주주 및 보험회사 주요주주의 동일인(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경우 총자산 6%로 제한된다. ‘보험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을 기준으로 한 동일인 운용한도는 보험회사 단독의 한도와 비율이 동일하며, 다만 ‘합산 총자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보험회사는 특정관계자 및 이들 특정관계자의 고객과의 사이에 부당한 거래 및 행위를 금지한다(법 제100조의3). 여기서 특정관계자는 당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당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보험지주회사, 당해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그 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즉 특정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통상적 조건과 현저히 다른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의 매매나 기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당해 특정 관계자간 또는 당해 특정관계자의 고객과의 사이에서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가 해당 보험회사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한다.<sup>147)</sup>

## 제 6 절 소 결

미국은 GLBA에 의하여 일반회사도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환 후에도 10년간은 비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미국에서의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만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지주회사는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

147) 안철경·이상우, 앞의 보고서, 104쪽.

일본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일본 내의 일반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당해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1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보험지주회사는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와는 달리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독일은 법제상 금융기관이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즉, 독일의 금융지주회사는 비은행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회사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독일은 겸업과 관련하여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당해 회사가 은행, 증권, 투자업을 동시에 영위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업은 자회사를 통하여만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국가에서 보험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 금산분리가 완전히 해제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와 오바마정부 이후 금산분리의 입법적인 수정은 없는 상태이나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에서는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근거를 둔 차단벽이 은행과 그 제휴회사간의 위험전이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고, 은행에 지원된 연방보조금이 은행 이외의 제휴회사에 이전되는 것을 막고 있다. 또한, 은행이 제휴회사와 중요거래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중에 있다. 금산분리에 관하여 미국 오바마 정부는 GLBA에 의해 금산분리가 완화되었던 것과는 달리 은행과 산업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48)</sup>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AIG그룹의 사례를 바탕으로 파산시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를 'Tier 1 FHC'(Tier 1 Financial Holding Companies)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BHCA의 규

148)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 new foundation』, 2009. 6, 10쪽 이하. [http://financialstability.gov/docs/regs/FinalReport\\_web.pdf](http://financialstability.gov/docs/regs/FinalReport_web.pdf)

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였다.<sup>149)150)</sup>

이 외에도 오바마정부의 금융개혁안은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Financial Service Oversight Council)의 창설,<sup>151)</sup> 보험부문의 감독강화<sup>152)</sup> 등을 예정하고 있어 앞으로의 후속조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금산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EU의 경우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반대해석으로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으며, EU 지침상으로는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sup>153)</sup>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의 경우 금융회사가 겸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험의 전이를 차단하는 차단벽은 이미 정비되어 있다고 한다.<sup>154)</sup>

<표 - 12> 주요국의 금융지주회사 규제 비교

	미 국	일 본	독 일	한 국
관	은행지주회사 : 은행지	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149)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앞의 보고서, 21쪽.

150) 거대 투자은행 Bear Stearns, Lehman Brothers 및 보험그룹 AIG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BHCA상의 규제는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 자금지원이라는 혜택만 누렸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이번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안은 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백정웅,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법의 과제』, 경영법률학회 2009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8. 21, 59쪽.

151)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앞의 보고서, 20쪽.

152)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보고서에서는 연방보험청(Office of National Insurance)을 창설할 예정이라 하면서, 보험시장의 시스템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강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등을 예정하고 있다.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앞의 보고서, 40쪽.

153) 백정웅, 앞의 논문, 103쪽.

154) 박연우, “정보차단벽(Chinese wall)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자본시장 Weekly 제 2008-27호, 2008. 7. 1, 2쪽.



	미 국	일 본	독 일	한 국
련 법	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 : 은행지 주회사법, GLBA 보험지주회사 : 주 보 험업법 투자은행지주회사 : 증권거래법	: 은행법 보험지주회사 : 보험업법 증권지주회사 : 증권거래법	: 보험감독법 (연방차원의 감독)	법(업종별 구 분 없음)
감 독 기 관	은행지주회사, 금융지 주회사 : FRB 보험지주회사 : 주 보 험감독원 투자은행지주회사 : 증 권거래위원회	금융청(업종 관계 없음)	연방금융감독 청(BaFin)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 회, 기획재정 부는 일부 관 여
정 의	은행지주회사 :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 금융지주회사 : 자본적 정성, 경영상태, CRA 등급요건 등 충족하여 FRB에 신고한 은행지 주회사 보험지주회사 : 보험회 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투자은행지주회사 : 1인 이상의 브로커 또는 딜 러를 비해·소유하는 회사	은행지주회사 : 은행을 지 배하는 회사 보험지주회사 :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회 사 증권지주회사 : 증권거래법 에 명시적인 조항없음	주된 영업 및 직접 또는 간접적인 출자의 행태가 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 혹은 연기금인 것으로써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회사	금융지주회사 : 주식 또는 지분을 통하 여 1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 을 주된 영업 으로 영위하 는 회사 보험지주회사 :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 기관을 지배 하는 비은행 지주회사

제 3 장 주요국의 보험지주회사 제도

	미 국	일 본	독 일	한 국
지 배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투자자은행지주회사 : 의결권 있는 주식 25%이상 소유, 과반수이상의 이사 또는 수탁인 선임권 보유, 의결권있는 주식 5%이상 소유하거나 FRB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결정한 경우 보험지주회사 :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 10%이상, 계약 등을 통해 경영 및 정책지도 권한을 보유	지배 :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주된사업 : 해당회사 총자산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50%를 초과	주된 영업 : 정관목적, 거래, 개별적 사례 등의 기준으로 판단	지배 : 금융지주회사가 계열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것 주된사업 :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의 50% 이상
인 가	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 설립인가 금융지주회사 : 전환요건을 갖추어 신고 투자은행지주회사 : 규제 없음	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 사전인가 증권지주회사 : 신고		금융지주회사 : 금융위 설립인가
업 무	사업지주회사 허용 다만,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업, 금융지주회사는 본질적 금융업무 및 부수업무만 영위 가능 보험지주회사,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규제 없음	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 순수지주회사만 허용 증권지주회사 : 규제없음	보험지주회사 :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있는 금융그룹 형태	순수지주회사 허용

	미 국	일 본	독 일	한 국
자 회 사	은행지주회사 : 은행 및 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금융지주회사 : 금융업 및 부수업무 보험지주회사 및 투자은행지주회사 : 제한없음	은행지주회사 : 은행 및 금융회사 보험지주회사 : 보험 및 금융회사(내각총리대신 승인시 비금융회사의 자회사 편입가능) 증권지주회사 : 제한 없음	보험지주회사 : 보험회사 또는 연기금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 금융회사
주 요 감 독 규 정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 동일인 소유한도 제한, 산업자본의 지배제한, 내부거래 규제 등 보험지주회사 : 보고 등 검사의무, 내부거래제한 등 투자은행지주회사 : 보고 및 검사	은행지주회사 : 소유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보험지주회사 :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내부거래 규제 등 증권지주회사 : 자료제출 및 수검의무	보험지주회사 : 예정보험그부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보험료 책정 및 준비금 적립의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자산 적립 및 재보험 출재의무, 리스크 현황 분기별 보고	소유제한, 차단벽 설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제한, 부채비율제한, 자본적정성 규제 등

## 제 4 장 보험지주회사 관련법제 개선방안

### 제 1 절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문제점

이미 2009년 7월 금산분리 완화는 이루어졌다. 이번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으로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기본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거래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제약을 부과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을 일반 금융기관에 비하여 특별히 유리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하는 측도 있다. 보험지주회사체제로 전환 또는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선택은 각 기업에서 해야 할 것이지만, 아직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설립사례는 없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전이나 개정 후에도 이렇게 설립이 어려운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대기업집단 중 금융과 비금융이 혼재하고 있는 금융·비금융 계열집단의 경우 복잡한 출자관계(순환출자·교차출자 등)로 인해 자회사간 위험이 쉽게 전이될 수 있어 그룹단위의 위기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험계약자 및 금융소비자의 자금을 위탁받아 고유계정으로 운용하는 보험회사 등이 지배력 확장의 축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지주회사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법적 문제를 정리해보면, 첫째,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과의 규제체계의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일부 규제에 있어서는 이중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개별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가 상이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임직원 겸직허용, 신용공여

한도제한 완화, 담보확보의무 삭제 등이 이루어져, 보험계약자 및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므로, 이해상충 가능성이나 부보된 자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지주회사 자회사의 업무영역이나 손자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확대논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필요성 판단 또는 조정범위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은 비은행지주회사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특히 보험업·금융투자업 중심의 글로벌 금융그룹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험지주회사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고려를 바탕으로,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험지주회사 제도 활성화하기 위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제 2 절 금융법 규제체계의 조화방안

### I. 중복규제의 개선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현행 금융법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체제로 개편되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그룹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소속의 금융기관들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해당 업종별 개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중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sup>155)</sup>

그런데 이러한 체계를 개선하여 단순화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

155) 김홍기, 앞의 논문, 16쪽.

것이다. 예전의 업종별 단순 규제체계를 적용하기에는 현대의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은 겸업화·대형화되어 여러 영역에 걸친 상품운영과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며,<sup>156)</sup> 해당 개별법도 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제62조 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소유제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 제한 완화,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 개별적인 규정을 두는 것에 그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의 업무범위와 자회사인 은행에게 적용되는 은행법상 은행의 업무범위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완전지주회사에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이사회의 기능이 사실상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은행의 업무 및 은행이사회의 권한의 상당 부분(은행법 제24조,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이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지주회사의 업무범위(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여 지주회사의 역할과 자회사 이사회의 기능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57)</sup>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규제체계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 중 규제강도가 높은 권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중복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sup>158)</sup> 해당 사항에 관한 조문에서 관련 법령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56) 대표적인 사례로는 방카슈랑스 제도, 변액연금 등이 해당될 것이다.

157) 김홍기, 앞의 논문, 16쪽.

158) 개별법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그대로 적용되기에 부적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Ⅱ. 보험지주회사와 자본시장법의 조화

### 1. 서 설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금융기관 간에는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업무통합이 이루어지고, 특히 대형은행과 대형증권사 간에 대형 투자은행 선점 경쟁이 전개될 것이며, 대형 보험사들은 보험지주회사 형태의 보험금융그룹을 형성하여 이에 대응하고 소형보험사들은 대형보험금융그룹이나 다른 금융그룹에 편입되는 상황이 예상되어왔다.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산업과 경쟁하여야 하는 한편, 보험지주회사 형태로 독자적 사업영역을 구축해 놓고 있는 외국 보험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보험사업의 거대화, 겸업화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에는 동감하는 바이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험지주회사 제도가 제안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업 및 신탁업 겸영이 허용되어 있으나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의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자산관리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투자기술 및 판매망에서 취약한 보험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정보의 확보와 새로운 수익원 확보차원에서 카드, 유동화자산관리업무를 겸영하고, 타금융업의 업무를 대행하는 방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 보험지주회사는 생·손보, 증권, 카드, 자산운용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 형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보험지주회사의 출현은 업무다각화, 복합상품 개발의 용이성, 소속 자회사간 정보공유허용, 대형화를 통한 기업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에서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up>159)</sup>

159) 김선정,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반응과 남겨진 문제”, 경제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9. 25, 6쪽.

## 2. 자회사 등의 업무위탁 허용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사이에 업무를 제휴하여 공동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휴업무는 각 주체가 직접 또는 위수탁 받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이 전제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제47조의 개정으로 자회사 등 사이의 업무위탁이 허용되었다.

업무제휴를 함에 있어서는 각 주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나 행태에 따라 업무제휴에서 분담하는 역할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 은행과 증권회사가 각자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에 관한 자문업무를 제휴업무의 사례로 보면, 고객의 자산관리에 대한 상담업무를 각 주체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 또는 증권회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소개나 권유 역시 해당 주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개나 권유는 실제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 경우 실제 해당 상품의 판매는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당사자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자신이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판매업무를 수탁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sup>160)</sup>

### (1)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업무위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 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와 본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행령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업무위탁에 관한 제47조의 규정은

160) 윤법렬·김지은, 앞의 논문, 119쪽.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이전에 이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령에서 위의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자본시장법의 입법형태를 고려하여 은행법을 개정한 것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에서도 자본시장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자본시장법상의 업무위탁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를 따로 정하고 있다. 즉, 위탁을 받는 업무가 본질적인 업무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본질적인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업무를 나열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표 - 13> 업무위탁의 허용내용 비교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위탁의 범위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제40조 각 호의 업무) 및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제41조제1항)
위탁금지 업무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 (대통령령 규정되어있지 않음)	①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제1호)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본질적 업무’ - 대통령령 규정되어 있지 않음)	를 제외한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② 본질적인 업무(시행령 제45조 제2호)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집합투자업 관련 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등 각 투자업별 본질적 업무
업무위탁 보고	보고의무자 : 금융지주회사 보고방법 :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보고의무자 : 수탁자 보고방법 :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
보고내용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방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업무위탁 을 제한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시정하는 경우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 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업무위탁 부작용 방지대책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준법감시인 설치	업무위탁운영기준의 마련의무화 업무위탁 또는 변경시 투자자 에게 통보

### (3) 보험지주회사 업무위탁 규정의 고려점

금융지주회사법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시행령을 마련할 때의 중요검토사항은 제47조 제4항의 금융지주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사항이라 판단된다. 동조에서는 본질적인 업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형태로 고려가 가능한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보험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우선 보험지주회사의 정의규정에서 규정된 바를 보면, 필수적으로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므로 보험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보험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아야 할 것

인데, 동 규정 제3조에서는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의 입법과 같이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별표1에서 ①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보험 상품 판매), ② 보험회사 공시(경영공시 및 상품공시 등), ③ 보험계약인수(underwriting)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 ④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⑤ 재보험 출·수재(해외 포함), ⑥ 제공제(농,수,축협 등), ⑦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회사, 신탁회사, 카드자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자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미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본질적 업무 위탁금지의 조항내용을 참고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본질적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에서와 같이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집합투자업 관련 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등 자본시장법과 조화되는 수준에서 각 투자업별 본질적 업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거나 준용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비금융회사(사업자회사)도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일반 사업 자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모두 열거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겠지만, 제47조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본문에서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비금융회사(사업자회사)는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Ⅲ. 보험지주회사와 공정거래법의 조화

#### 1. 서 설

금융지주회사법의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와 보험지주회사 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가장 큰 논란은 이들 제도를 이용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민주성을 완전히 확보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의 위험성을 대비할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161)</sup>

결국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를 완화하면 보험지주회사 등을 통하여 기업의 소유구조 및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지주회사’라는 제도 자체가 자회사의 사업지배를 본질로 하는 것이고, 사업지배는 주식의 소유를 그 수단으로 하며, 자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므로,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문제에 영향을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sup>162)</sup> 다만,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보험지주회사는 유리한 기업형태일 것이고, 지주회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어떠한 회사가 지주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회사가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제한성을 보일 때 제한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sup>163)</sup> 따라서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의 형성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아닌 만큼, 보험지주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공정거래법과의 조화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1) 이에 대한 상세는 성승제, “재벌금융계열사의 주식소유집중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2006, 191쪽 이하 참조.

162) 이에 대해서 지주회사가 구조적으로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기업실정을 보더라도 지주회사가 기업결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예는 거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김찬진, “독점규제법과 경제력집중억제제도”, 상사법연구 제10집, 1992, 332쪽.

163) 이동원,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변화와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9. 9. 25, 32쪽.

## 1.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완화

### (1)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검토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제8조의2 제2항 제4호),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제8조의2 제2항 제5호).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규정에 대하여 이를 삭제하고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바가 있다.<sup>164)</sup> 그런데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으로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자회사 지배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고, 보험지주회사를 비롯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므로, 제8조의2 제2항 제4호의 금융지주회사가 일반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일반자회사·손자회사는 일반손자회사·증손회사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자회사·손자회사는 금융손자회사·증손회사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비금융 혼합지주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개정될 경우 금융자회사는 금융손자회사만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 체제내의 금융자회사는 비금융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

164) 2009. 4. 13. 정부제출안, 2009. 10. 22. 현재 국회계류 중.

으므로, 자회사 이하단계에서는 금융과 비금융이 엄격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일반지주회사에서 은행자회사를 두고 사금고화 시킨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법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소유한도를 9%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 지배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sup>165)</sup>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되던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융지주회사법상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설명도 있다.<sup>166)</sup>

그에 반하여, 개정안과 같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회사와 금융회사가 실질적인 규제 없이 계열회사가 되어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되어 기업확장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산업의 위협이 금융부문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는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sup>167)</sup>

## (2)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지배허용의 신중론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두는 것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두는 것이 같은 수준의 규제완화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첫째,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에서 ‘순수지주회사’로 그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일반지주회사는 별도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지주회사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순수지주회사는 통상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전념함으로써 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지주회사는

---

165) 고병희, “지주회사 규율체계의 변화동향”, 한국경제법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9. 25, 25쪽.

166) 고병희, 앞의 논문, 21쪽.

167) 김건식·노혁준 편저, 『지주회사와 법』, BFL 총서, 소화, 2005. 10, 28쪽 ; 앞의 정부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09. 4, 8쪽 참조.

별도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에 비해 산업의 부실이 금융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더 높은 것이며, 일반지주회사의 영리사업의 영업상태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금융자회사의 경영도 불안한 상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168)</sup>

둘째,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장치 수준이 다르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설립시에 금융위원회에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고, 자회사 편입시에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에 있어서도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정거래법에서는 설립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자회사의 편입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가 없으며,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도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셋째,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은행법에서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비율이 9%까지인 점을 들어 은행자회사의 소유가 금지된다고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지주회사의 허용례를 들어 금융지주회사법

168) 일반지주회사의 경영영향을 보여주는 예로 삼성에버랜드(주)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삼성에버랜드(주)는 2003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인 삼성생명보험(주) 및 (주)올렛의 주식가액이 동사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되어 2004. 1. 1.자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가 삼성생명보험(주)의 주식가치 평가액 하락으로 인해 2004. 8.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위 양 자회사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해 2004년 말 대차대조표상 양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다시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보이자 삼성에버랜드(주)는 이로 인해 재차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삼성생명보험(주)주식의 일부를 은행에 신탁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과 대칭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비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자회사소유를 허용하면서도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자회사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던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 2. 비은행지주회사 부채비율 완화의 검토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제35조를 개정하여 비은행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부채의 보유를 금지하되, 설립당시 2배를 초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2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존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유지 의무규정을 폐지하려는 안을 제출하였다.<sup>169)</sup>

일각에서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지정 후 2년이내까지 상호채무보증유예기간이 제공되는바(법 제14조 제3항 제3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하고, 지주회사 전환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 제8조의3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상호채무보증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견제하고, 한계기업의 시장퇴출을 촉진하며, 특정기업의 부실에 따른 연쇄부실을 방지하고, 대규모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한다는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의 입법이유<sup>170)</sup>를 고려하고, 지주회사체제에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부채비율이 일정한도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채무보증의 필요성도 원천

169) 앞의 정부제출 공정거래법 개정안 참조.

170) 신현운, 『경제법 (제2판)』, 법문사, 2007, 226-227쪽에서는 상호채무보증의 폐해로서 경제력집중의 가속화, 퇴거장벽의 형성, 기업위험의 사회화 등을 들고 있다.

적으로 클 수 없고, 채무보증을 미리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제한의 취지와 부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제8조의3을 폐지하더라도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지정 후 2년 이내에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므로 결국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앞당겨지는 기간은 2년 미만이 된다.<sup>171)</sup>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8조의3을 폐지할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제 3 절 금산분리 완화의 제도적 보완

#### I. 보완의 필요성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제는 연방 은행법과 달리 사전적인 소유규제나 업무영역의 규제가 없지만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된 중요거래에 대해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중요거래 건별로 보험감독관에 대한 사전보고 내지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를 통해 금산분리 원칙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미국 보험산업에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미국 은행법과 보험법의 접근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sup>172)</sup>

또한, 최근의 미국의 금융정책은 GLBA에 의해 금산분리가 완화되었던 것과는 달리 은행과 산업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당분간 금산분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sup>173)</sup>

이와 같이 미국이나 EU의 금융정책이 금산분리의 강화 또는 유지

171) 김두진, 앞의 논문, 74쪽.

172) 김상조, “미국 보험지주회사제도에서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제26호, 2006. 4, 34쪽.

173) 백정웅, 앞의 논문, 103쪽.

의 경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완화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법적 보완사항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II. 임직원 겸직허용에 대한 보완

### 1. 임직원 겸직허용의 우려와 기대

금융지주회사법은 제39조를 개정하여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의 임직원의 겸직을 허용하였다. 다만 허용의 범위를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하여(제39조 제3항)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과 비금융회사와의 임원겸직은 제한되고 있다.<sup>174)</sup>

기존의 금융기관 임직원 겸직의 규정을 보면,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수직적 겸직은 이미 허용되어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자회사 등의 수평적 임원겸직이 허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겸직허용,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보험회사와 다른 금융기관과의 임직원 허용은 자회사 단위의 경영체계를 벗어나 기능단위의 경영으로 전환하여 지주회사 체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75)</sup>

그런데 이러한 임직원 겸직허용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있다. 보험지주회사와 같은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개별 자회사 입장에서 최선의 전략이 그룹 전체에서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sup>176)</sup>

---

174) 다른 법에서 임직원 겸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은행법에서는 은행의 임직원 이외에는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으며(은행법 제20조), 공정거래법상 임원겸임은 기업결합의 한 유형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제2호), 상법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 이상 임원겸임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상법 제397조 제1항).

175) 외국의 금융그룹의 경우에도 개별 자회사 단위의 임원이 아니라 금융그룹 전체의 기능단위로 임원을 소개하고 있다. Bank of America의 경우 소비자금융, 기업금융, 자산관리 부분 등으로 구분하고 임원이 자회사를 총괄하여 경영하고 있다.

176) 신보성,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임원겸직 허용의 의미”, 자본시장 Weekly,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룹전체를 기능단위별로 임원이 책임을 지고 경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의 대표적인 임직원 겸직의 사례로 보험회사와 다른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업무를 동일한 임원의 지휘 아래 수행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 간에 불필요한 경쟁유인이 제거되고 서너지 유인이 발생할 것이며, 고객 입장에서도 여러 권역별 장점이 조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sup>177)</sup>

## 2. 임직원 겸직의 제한내용

### (1) 업무에 따른 제한

보험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임직원 겸임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나 집합투자업,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있어서는 제한되고 있다.

### (2) 내부통제기준의 부적절성에 따른 제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은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내용이 ①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②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③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④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겸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내부통제기준의 보완

### (1) 금융관계법의 내부통제기준 비교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5 제10항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내용

---

2009-32호 1쪽 이하 참조.  
177) 신보성, 앞의 논문, 2쪽.

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각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기준의 필수포함사항 또는 모범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화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미 보험업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자본시장법(제 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이나 은행법(제23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 14> 내부통제기준의 비교

보험업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li> <li>·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li> <li>·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li> <li>· 임원 또는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li> <li>·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li> <li>·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li> <li>·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li> <li>·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의 운용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li> <li>·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li> <li>·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li> <li>·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li> </ul>

보험업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 및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임원 또는 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li> <li>· 임원 또는 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li> <li>·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li> <li>·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li> </ul>	<p>의 처리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li> <li>·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li> <li>·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li> </ul>	<p>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li> <li>·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li> <li>·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li> <li>·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li> <li>·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li> </ul>

보험업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	-----	-------

그런데 위 표에서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각 법의 내부통제기준은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사실상 해당 금융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된 내부통제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보험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법이론상으로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구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는 은행업상의 내부통제기준도 포함되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나, 보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두지 못하므로 은행업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은행업의 내부통제기준이 자본시장법의 내부통제기준보다 엄격한 수준이거나 보험지주회사가 영위하지 않는 사업분야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일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보험지주회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제체계를 달리한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보험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험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시를 위한 타 금융분야 모범사례로 금융감독원의 투자자문회사 ‘모범내부통제기준’을 보면, 현행 내부통제기준에 비해 세부적으로 투자자문회사의 특성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 15> 투자자문회사의 모범내부통제기준(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고객재산	○ 투자자문/일임업무 계약관련

구 분	주 요 내 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권유문서의 교부 및 설명 여부</li> <li>- 투자자문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는 행위의 적정성 여부</li> <li>○ <b>행위준칙(code of conduct) 준수 여부</b></li> <li>-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자산간 거래 또는 투자일임자산간 거래 행위</li> <li>- 전문인력이외의 자에게 투자자문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li> <li>- 고객에게 자금대여 또는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li> <li>- 이익보장 또는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행위</li> <li>- 투자일임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등</li> <li>○ <b>내부통제기준 수립 및 운용</b></li> <li>- 내부통제관련 규정(컴플라이언스규정, 위험관리규정 등)의 제정 및 준수여부 점검</li> <li>- 위규행위 관련 임직원 제재요구, 부당업무에 대한 시정·개선요구</li> </ul>
고유재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회계처리 및 자금관리의 적정성 여부</b></li> <li>○ 고유재산 운용의 적정성 여부</li> <li>○ 최저순자산액 유지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윤리강령(code of ethics) 준수여부</b></li> <li>- 선행매매(front running), 과당매매(churning) 금지</li> <li>- 임직원 유가증권 매매행위 제한 등</li> <li>○ <b>각종 보고·공시의무 이행여부</b></li> </ul>

자료 : 증권감독원 정례브리핑 자료, 2006. 2. 7.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주로 기업 회계 관련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령에 정해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기관에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회계영역에 관한 것과 회계영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영역을 모두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완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178)</sup>

보험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보험지주회사의 운영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업법상의 기준과 자본시장법상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행법상의 내용은 사실상 보험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금산분리원칙의 완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내부통제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임직원 겸임의 경우뿐만 아니라 자회사 등 간의 업무위탁의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의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행 은행법 등에서의 기준보다는 강화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회계영역과 직접관련이 없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준법감시인제도를 통한 내부통제제도의 보완

##### (1) 준법감시인<sup>179)</sup>제도의 설치근거

---

178) 일본의 내부통제제도는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법에서는 대회사에 대해 이사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와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을 의무화하고(회사법 제348조 제4항, 제362조 제5항, 제416조 제2항), 이를 받아 법무성령에서는 법령준수체제, 리스크관리체제, 정보관리체제 등(회사법 시행규칙 제100조)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경영자에 대해 “재무보고에 관련된 내부통제” 평가보고서(내부통제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 내부통제보고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의 4, 제193조의 2). 권중호,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V)-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08. 6. 30, 51쪽.

179) 금융기관에 있어서 준법감시는 금융기관이 임직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준법감시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을 말하며, 준법감시인은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원동욱, “내부통제 의무 관련 준법감시인의 지위”, 기업법연구 제22권 제1호, 2008. 3, 254쪽.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 5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규정을 신설하면서, “금융지주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준법감시인)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준법감시인은 금융관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임되지만 회사법상의 ‘기관’은 아니어서 그 법적지위가 문제된다. 현재 일부 대규모 금융기관들은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임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에서는 일반직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sup>180)</sup>

## (2)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지위강화

내부통제기준은 금융기관이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의 이사에게 있다. 준법감시인에게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조사 및 보고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인을 이사 수준의 지위로 보기에선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 5 제5항에서 준법감시인에게 선관주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업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그 독립성을 보장하여 독립적인 지위부분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 5 제6항에서는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산분리 완화 등의 개정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내부통제제도를 제시하였고, 결국 이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조사하는 것은 준법감시인이므로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내부통제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180) 신한은행 2007. 9. 분기보고서, 국민은행 2007. 9. 분기보고서, 우리은행 2007. 9. 분기보고서 등 참조 ; 원동욱, 앞의 논문, 255쪽 재인용.

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준법감시인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 5 제7항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임면시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에 대한 임기규정은 없다. 준법감시인에 대한 임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준법감시인이 해당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기간 중 준법감시인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여, 준법감시인이 부당하게 해임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준법감시인이 다른 업무를 겸영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준법감시인이 일반사원의 지위에 있다 보니, 일반부서의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전문적으로 준법감시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인이 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갖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일반업무와 겸직되는 것을 금지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임원겸직의 자기거래문제

### (1) 상법 제398조의 적용 논의

보험지주회사를 비롯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임원겸직의 허용은 겸직이사를 보유한 회사간 거래가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sup>181)</sup>

---

181) 예컨대 갑이 A회사와 B회사의 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A·B가 거래하면 자기거래에 해당하느냐는 문제이다. A와 B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갑이 A·B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쌍방에 대해 자기거래가 된다는 데에는 의문이 없다. A의

이는 수직적 임원겸직만 허용되었던 시기에도 제기되었던 문제이나,<sup>182)</sup> 이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183)</sup> 2008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의 확대 및 승인요건의 강화를 추진하였으나, 재계의 반대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현행 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에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와 같은 규정은 외국의 경우에도 볼 수 있다.<sup>184)</sup>

현행법의 규정대로라면, 겸임이사가 있는 회사간 거래에서 각 회사의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sup>185)</sup>

그러나 모든 경우를 상법 제398조의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한 이사 겸임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98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sup>186)</sup>

## (2) 보험지주회사 등에서의 상법 제398조의 적용방법

보험지주회사 등의 경우에는 상법 제398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

대표이사와 B의 이사를 겸하고 있는 갑이 A를 대표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B회사에 대하여 자기거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A에 대해서도 자기거래가 되고, 갑이 A·B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라 하더라도 A·B의 거래는 자기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거래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 624쪽.

182) 김현태·김학훈, “자회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법적수단”, 『지주회사와 법』, 소화, 2005. 10, 333쪽.

183) 이에 대한 판례를 보면, 동일인이 서로 다른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면, 두 회사간의 거래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판결).

184) 영국 회사법 제320조, 미국 RMBCA §8.60, 일본 회사법 제256조 참조.

185) 이철송, 앞의 책, 624쪽.

186) 노혁준, “지주회사 관계에서 이사의 의무와 겸임이사”, 『지주회사와 법』, 소화, 2005. 10, 379쪽.

이를 위해서는 2008년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개정안의 거부 사유를 볼 필요가 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견을 보면, 이사회 승인대상을 확대하면, 승인대상 거래가 크게 늘어 거래의 신속성이 저해되고 시너지효과 차단 등으로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상 일부 기업에서는 자기거래의 승인을 위해 이사회를 매일 또는 매주 개최해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거래상대방 선택은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들이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기거래를 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여 이사와 동일한 제재가 가능하고, 지배주주 등과 거래를 한 이사들에 대하여는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sup>187)</sup>

보험지주회사 등에서 임원겸직을 허용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지주회사의 기능단위별 임원의 선임과 경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회사와 금융기관과의 임원겸직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비금융회사의 이사가 금융기관의 이사를 겸직하여 간접거래로써의 자기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적어 보인다. 또한, 비금융회사간의 이사겸직이나 금융기관간의 이사겸직에 의하여 어느 한 회사의 이익이 대표된다거나 실질적으로 겸직 이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겸직이사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를 적용하여 이사회 승인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법의 해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거래가 이사회 부의대상인 중요사항이고 겸직

---

187) 전삼현, “지배구조관련 상법개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업소송연구, 2005(II), 423쪽.

이사가 어느 회사 이사회의 결의 결과에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이른바 간접거래인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직적·수평적 이사겸직이 허용된 상태에서 겸직이사의 자기거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중요거래에 대한 공정성<sup>188)</sup>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sup>189)</sup> 예컨대, 이사회의 승인을 위하여 이해충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거래제한의 취지는 회사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공정하였고, 사후에라도 승인을 얻은 경우,<sup>190)</sup><sup>191)</sup>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한 그 거래의 무효를 해당회사가 주장할 여지는 적을 것이다.<sup>192)</sup>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라도 사전승인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후승인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사의 책임이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Ⅲ. 자회사 등 신용공여한도의 제한

#### 1.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대한 규제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

188) 이사의 자기거래에 있어서의 ‘공정성 요건’에 대하여는 2008년 상법 개정안에서 제안되었던 바가 있다.

189) 노혁준, 앞의 논문, 379쪽.

190) 상법 제398조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지만, 사후승인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2007. 5. 10. 선고2005다4291 판결에서는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191) 미국 모범회사법(RMBCA §8.61(b)(3))에서는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회사법에서는 사전승인이 원칙이지만 사후승인도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92) 같은 의견으로 김재범, “이사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유용의 제한”, 법학논고 제29집, 2008. 12, 89쪽.

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보험회사의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대출, 어음 및 채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등이 해당된다(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만,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당해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또한, 보험업법 제116조에서는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자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 2. 금융지주회사법의 신용공여제한 완화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은행·증권 및 증권회사인 자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여타 자회사에게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전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자회사간 신용공여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적정 담보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8조).

그런데, 2009년 개정에서 신용공여제한 및 담보확보의무에 대하여 보험업법상의 규정만 적용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서의 규정은 삭제하여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동일차주<sup>193)</sup> 및 동일한 개인

---

193)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기존의 신용공여한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 적절한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적용배제되었다. 이는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2항에 대한 특례로써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은행지주회사 수준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한 완화 및 보험업법상의 규제를 이중으로 받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

<표 - 16> 신용공여 관련 규제 비교



제 4 장 보험지주회사 관련법제 개선방안

구 분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비은행지주회사)	보험업법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 당해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10%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당해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20%	없 음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40%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10%
적정담보 확보의무	있 음	없 음	없 음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금지함	허 용	제한있음 (동일한 개인·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 총자산의 20%)

3.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확보수단의 제고

전술한 바와 같이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신용공여에 대한 규제는 적용이 배제되고, 보험업법상의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사실상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40%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보험업법상에는 적정담보 확보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자회사에 대하여 적정담보 없이도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업종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거래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번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으로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를 허용하는 등 수직적·수평적 계열 확장이 용이해지고, 자회사가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까지 허용된 상황에서 보험지주회사의 자산운용·건전성 등 관련 규제까지 일거에 완화한 것은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 방지장치의 부재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제34조 제2항에서 비은행지주회사 등이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합계액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지주회사와 대주주와 거래내용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회사 간의 신용공여에 대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회사 간의 신용공여에 대한 적절한 건전성 확보 수단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에 따른 적정담보확보 의무는 교차 담보설정 등의 방법을 취하면 사실상 담보로써의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최근 보험감독법의 개정으로 그룹전체의 신용공여 10%이상이 동일한 투자대상에 집중된 경우 리스크현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sup>194)</sup>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제고 또는 감독기능의 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제 4 절 보험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업종조정

### I. 보험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업종규제

금융지주회사법의 금산분리 완화에 따라 보험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증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도 일반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를 자회사

194) 제3장 제3절 독일의 보험감독 내용 참조.

로 들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금융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배에 있어 요구되는 현행 업무관련성 요건을 폐지하여 원칙적으로 업무관련이 없는 손자회사 지배를 허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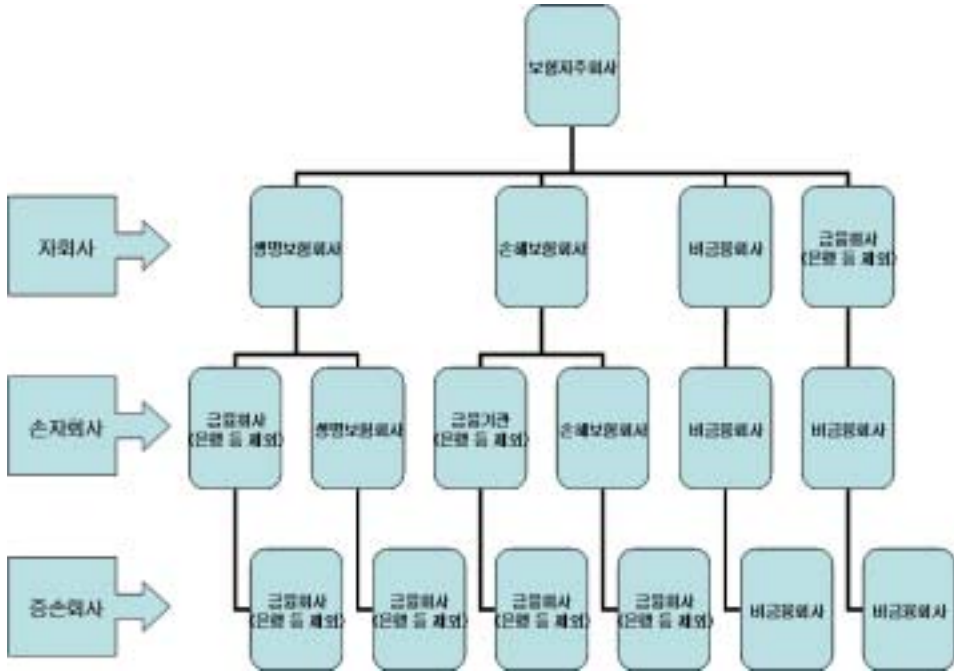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비금융회사, 금융기관,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또한,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지주회사의 형태로서 비금융회사, 은행 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조 제1항).<sup>195)</sup>

이를 정리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위험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쪽의 위험이 다른 한쪽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직적 출자를 금지한 것이며, 비금융회사를 보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 <그림 - 4> 보험지주회사 개념도

195) 단, 보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완전지주회사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개정 보험지주회사법 제26조 제3항 참조.



## II. 보험지주회사 업종규제의 유지

### 1. 자회사 등의 업종제한 완화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업종제한은 금융투자지주회사 자회사의 업종제한에 비하여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예컨대, 보험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 등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지주회사 소속 금융투자회사는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금융의 겸업화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sup>196)</sup>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업태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보험업법에서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둘 수 있는 회사의 범위와 같고, 보

<sup>196)</sup> 김선정, 앞의 논문, 12쪽.

험지주회사의 경우, 그 밖에도 총리 승인에 의하여 사업회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보험지주회사가 보험업법상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97)</sup>

또한, 생명보험·손해보험 겸영을 둘러싼 갈등이 심하였던 일본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상호참입 또는 생명보험·손해보험 겸영방식으로 기왕의 모회사·자회사 방식과 함께 선택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시장의 참입과 퇴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면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의 보험지주회사제도에서 손자회사의 업종규제는 없다는 것을 근거로, 장기적으로 볼 때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은행을 설립하는 문제도 무조건 금기시 할 일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sup>198)</sup>

## 2. 자회사 등의 업종제한 유지필요성 검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업종 제한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서 보험지주회사 소속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장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와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은행지주회사 소속 투자금융회사의 경우 고유계정으로는 투자자의 수탁재산이 아닌 자기자본투자<sup>199)</sup>만 가능하므로 비금융 손자회사 지배를 금지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허용한 것으로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업무영역의 문제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

197) 성승제, “일본 보험지주회사 입법 그리고 한국 보험지주회사론”, 비교사법 제16권 제2호, 2009. 6, 503쪽.

198) 김선정, 앞의 논문, 13쪽.

199) 금융기관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여 특정회사의 채권·주식 등을 인수·매도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다만, 현행 보험업법의 업무영역과 조화시켜야 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②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가 있으며,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로는 ① 보험수리업무, ②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 업무, ③ 보험에 관한 연수·간행물·도서출판업무, ④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및 판매 업무, ⑤ 보험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무와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로는 ①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② 대여금고 업무, ③ 수입인지·복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업무, ④ 기업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담 및 위험관리 업무, ⑤ 금융·경제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⑥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 등이 있으며,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⑧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sup>200)</sup>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보험사의 자회사의 경우 현행 보험업법상의 업무영역보다 축소된 것은 사실이므로 손자회사의 업무영역 제한이 보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에 심각한 제약요건이 된다면 보험계약자와의 이해상충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

200)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제 4 장 보험지주회사 관련법제 개선방안

업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 5 장 결 론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으로 2009. 10. 10.부터 단독은행, 지주회사에 관계없이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한도가 9%로 높아지게 되었다. 9% 소유라는 기준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KB금융·신한·하나 지주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최저 6.33%(KB금융)에서 최고 9.55%(하나금융)인 점을 감안하면<sup>201)</sup> 9%의 지분율로도 금융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10월 8일 생명보험 회사로는 최초로 동양생명이 상장에 성공하였고, 최근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대한생명 등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202)</sup> 생명보험사의 상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각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생명보험사의 상장 이후 보험지주회사로의 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음은 짐작되는 바이다. 결국, 보험산업과 관련한 제도적·산업구조적 일련의 변화는 보험지주회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기반아래 설립이 가능하다. 2009년 개정 전의 금융지주회사법은 보험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고는 있었지만, 보험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되고,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지주회사의 출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지주회사 설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이후라 하더라도 실제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출 가능성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것이다. 금융전업그룹 소속 보험

201) 중앙일보(2009. 7. 23) 보도내용 참조.

202) MBC 뉴스 보도(2009. 11. 16) 내용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24186>



회사는 대기업 소속 보험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태로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외국계 보험회사는 외국계 금융지주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도록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보험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의 경우인데, 다수의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을 순환출자형태로 계열 내에 편입·지배하고 있어 현행 규제 및 금융정책 하에서는 보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이 어려울 것이다.<sup>203)</sup>

따라서 보험사 업무영역의 다양화·대형화 등 보험산업의 구조변화에 적합한 형태로 보험지주회사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을 비롯하여,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의 규제체계 및 규율의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금산분리가 완화와 함께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보험계약자 및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지주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보이고 있는 대응정책 및 사전적 대비를 위한 규제방안 등 금융감독에 대한 강화 논의들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Firewall 강화정책과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의 지배형태에 관한 논의로 손자회사의 업종규제에 관한 완화 및 은행업 지배허용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법제의 체계의 측면으로나, 현행 보험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하면,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특히 은행업의 지배를 논하는 은산분리의 완화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에서도 예가 없는 것이고 금산분리의 수준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203) 김선정, 앞의 논문, 66쪽.

한편, 장기적으로는 보험지주회사의 규제형식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지주회사의 규제형식에 대해서는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었던 개편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업법에서 보험지주회사를 규정하는 방안, 보험지주회사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 금융지주회사법에서 현실적으로 보험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 내용 중 보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금융법 규제체계를 크게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지주회사법 내에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 겸업화 동향을 반영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험지주회사 관한 법제는 우선 일반적인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체계에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그에 더하여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다시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제한 규제 등은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법의 적용이 복잡하다. 또한, 보험산업 자체적으로도 지급결제업무의 허용 논의, 보험회사의 은행업무 영위 논의 등 금융상품의 겸업화·대형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이 경우 보험지주회사 형태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것이 예상되는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를 현행과 같이 보험업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에서 보험지주회사를 이해하는 시각은 은행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를 이해하는 시각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 즉,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에는 보험산업의 특성, 즉 시스템리스크와 자금고화의 위험성이 적다는 특성<sup>204)</sup>을 이해하고 보험산업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보험지주회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보험업법에서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은행지주회사와 규제체계를 분리하여 두고 있다.

따라서 보험지주회사의 규제체계를 그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두면서 영업규제에 관한 내용을 개정해 나갈 것인지, 보험산업 자체의 겸업화·대형화, 업종의 다양화<sup>205)</sup> 논의를 반영하여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율법 체계를 구분하는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

204) 김선정, “금융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 규율방식의 분리에 관한 검토” 경영법률 제19권 제1호, 2008. 10, 69쪽.

205) 독일의 경우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하기 위해 보험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였고, 이를 BaFin의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감독하고 있다. SPV는 직접 보험 혹은 재보험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으나, 원·재보험회사의 위험을 인수하고 채권을 발행하여 위험을 전적으로 담보하는 회사이며,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은 장수리스크 및 대재해리스크 등을 자본시장에 전가하기 위해 SPV를 설립하고 있다. 김지은, 앞의 보고서, 17쪽.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강형철,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향후전망”, 자본시장 Weekly, 2008. 4. 29.
- 고병희, “지주회사 규율체계의 변화동향”, 한국경제법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9. 25.
-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8.
- 권종호,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V)-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08. 6.
- 김건식·노혁준 편저, 『지주회사와 법』, 소화, 2005.
- 김광록, “보험지주회사 도입논의를 위한 미국법제 연구”, 기업법연구 제23권 제2호, 2009. 6.
- \_\_\_\_\_, “미국의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동향”, 『주요국의 보험지주회사 관련법제의 동향과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9. 3. 20.
- 김두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쟁점검토(금융지주회사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9. 6. 19.
- \_\_\_\_\_,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제도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제14권, 2006.
- 김상조, “미국 보험지주회사제도에서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사회경제평론 제26호, 2006.

참고문헌

- 김석연, “금융위기와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싼 담론의 문제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보고서, 2008. 12.
- 김선구·류근관·빈기범·이상승,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  
선방향』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연구센터, 2003.
- 김선정, “금융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 규율방식의 분리에 관한 검토”,  
경영법률, 2008. 10.
- \_\_\_\_\_,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반응과 남  
겨진 문제”, 경제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9. 25.
- 김영래, “일본의 재벌(Zaibatsu)과 기업집단(Kigyosudan)에 관한 연구  
: 소유,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연구총  
서 2000.
- 김재범, “이사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유용의 제한”, 법학논고 제29집,  
2008. 12.
- 김지은, “최근 독일 보험감독 정책변화 및 시사점”, 조사연구 Rewiew  
제27호, 금융감독원, 2009. 9.
- 김찬진, “독점규제법과 경제력집중억제제도”, 상사법연구 제10집, 1992.
- 김학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지주회사와 법』, 소화, 2005.
- 김현태·김학훈, “자회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법적수단”,  
『지주회사와 법』, 소화, 2005. 10
- 김흥기,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지주회사 규제의  
방향”, 한국경제법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9. 9. 25.
- 김훈·유종민, “금융지주회사의 도입효과 분석과 발전방향”, MONTHLY  
BULLETIN, 2008. 9.

- 노혁준, “지주회사 관계에서 이사의 의무와 겸임이사”, 『지주회사와 법』, 소화, 2005. 10.
- 민세진, “보험지주회사의 법적 쟁점”, BFL 제29호, 2008. 5.
- 박상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연구 -(환상형)순환출자금지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14권, 2006.
- 박연우, “정보차단벽(Chinese wall)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자본시장 Weekly 제2008-27호, 2008. 7. 1.
- 박영준, “영국의 금융규제현황과 보험지주회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09. 9. 25.
- 백정웅, “힘의 원천이론”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 2005.
- \_\_\_\_\_,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법의 과제』, 경영법률학회 2009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8. 21.
- 안재욱,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금융기관의 정의를 중심으로-, 기업소송연구, 2006.
- 안철경 · 이상우,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6.
- 안철경 · 민세진,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규제 연구”, 보험학회지 제75집, 2006. 12.
- 원동욱, “내부통제의무 관련 준법감시인의 지위”, 기업법연구 제22권 제1호, 2008. 3.
- 유주선, “독일의 금융규제 현황과 보험지주회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09. 9. 25.

참고문헌

- 유진희, “지주회사 규제의 정책방향 -일반지주회사의 규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5권 2호, 2006.
- 윤법렬·김지은, “금융지주회사법 소고”, BFL 제34호, 2009. 3.
- 윤성은, “비예금수취기관 지급결제망 직접참여의 의미와 문제점”, The Banker, 2008. 10.
- 이건범·김우진,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5. 12.
- 이동원, 지주회사, 세창출판사, 2000.
- \_\_\_\_\_,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변화와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9. 9. 25.
- \_\_\_\_\_, “지주회사의 현대적 의의”, 한국비교사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6. 11. 4.
- 이병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 완화는 필요한가?”, 한국금융연구원 16권 40호, 2007.
- 이봉의,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대안 검토”,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규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6. 6.
- 이양복,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법학 제51권, 2008.
- 이우광,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외국의 운용사례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이종민,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8. 12. 19.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

- 성승제, “일본의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9. 3. 20.
- \_\_\_\_\_, “재벌금융계열사의 주식소유집중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2006.
- \_\_\_\_\_, “일본 보험지주회사 입법 그리고 한국 보험지주회사론”, 비교사법 제16권 제2호, 2009. 6.
- 손상호, “금융업무의 특성과 겸업화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5.
- \_\_\_\_\_, “금융겸업화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금융연구원, 2005.
- 신보성·송홍선, “금융투자지주회사 제도 도입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2008. 11.
- 신보성,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임원겸직 허용의 의미”, 자본시장 Weekly, 2009-32호.
- 신현윤, 경제법, 법문사, 2007.
- 전삼현, “지주회사의 구조와 운영상 개선과제”, 상장협 49호, 2004.
- \_\_\_\_\_,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와 대안, 자유기업원, 2002.
- \_\_\_\_\_,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8. 12. 19.
- \_\_\_\_\_, “지배구조관련 상법개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업소송연구, 2005(II).
- 전성인,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감독 -Gramm-Leach-Bliley Act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제7권 제2호, 2001.
- 정경영, “영국과 미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관련 법제연구”, 법제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07.



참 고 문 헌

- 정윤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제와 투자자 보호“, 한국증권연구원, 2007.
- 최승필, “유럽의 보험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9. 3. 20.
- \_\_\_\_\_, 유럽에 있어서 금융행정으로서의 금융규제체제, 유럽헌법연구, 제4호, 2008.12.

<외국문헌>

- Andrew Haynes, 『Financial Services Law Guide』, Tottel, 2006.
- Eleanor M. Fox and L. A. Sullivan, The good and bad trust dichotomy: a short history of a Legal Idea, in: T.P. Kavaleff (ed.), Antitrust Impulse, 1994.
- Harry P. Kamen, William J. Tppeta, The Life Insurance Law of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1.
- Markian M.W. Melnyk & William S. Lamb, PUHCA’s Gone: What Is Next For Holding Companies? 27 Energy L. J. 1, 2006.
- Michael Blair QC, 『Financial Services & Markets Act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Financial Markets and Exchanges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Micahael Blair QC-Loretta Minghella, Micael Taylor, Mark Threipland & George Walker, 『Financial Services & Markets Act 2000』, 2001.

- Randall K. Morck and Masao Nakamura, *A Frog in a Well Knows Nothing of the Ocean: A History of Corporate Ownership in Japa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 new foundation』, 2009.
- Tony Freyer, *Regulating Big Business: Antitrust in Great Britain and America 1880 -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Gerster-Klein-Schoppmann-Schwander-Wengler, 『European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 Gruson, Reisner, *Regulation of Foreign Banks -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n-*, Third Ed., 2000.
- Goodhart, Charles, Phillip Hartman, David Llewellyn, Liliana Rojas Suarez, Steven Weisbrod, “Financial Regulation : Why, How and Where now in association with the Bank in England” Routledge : London, 2001.
- Joanne M. Derrig, *Insurance Holding Company Law With Its Federal Banking Law Counterparts*,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3, No. 4, 1985.
- Jonathan Russen, 『Financial Servic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Stuart Bazley & Dr Andrew Haynes,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Regulation and Risk-based Compliance』, Second Edition, Tottel, 2007.

<기타자료>

경제개혁연대, “삼성과 금산분리”, 경제개혁리포트 금산분리 특집 4호,  
2008. 1. 22.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법해설』, 2003. 12.

금융위원회,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 2008.

금융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안”, 2009. 2. 10.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10대 쟁점과 실상”, 2009. 2.

참여연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홈페이지, 2008. 11. 12.

한국은행, 2008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보고서, 2009.

<http://www.senate.gov>.

[http://www.tokiomarine-nichido.co.jp/world/pdf/TMNF\\_2008\\_d.pdf](http://www.tokiomarine-nichido.co.jp/world/pdf/TMNF_2008_d.pdf)

<http://www.sonylife.co.jp/company/corporate/disclosure/files/07data.pdf>

[http://www.sonysonpo.co.jp/pdf/ar\\_21\\_2008.pdf](http://www.sonysonpo.co.jp/pdf/ar_21_2008.pdf)

[http://sonybank.net/pdf/disclosure2008h\\_1.pdf](http://sonybank.net/pdf/disclosure2008h_1.pdf)

[http://www.sonyfh.co.jp/ja/company/data/governance\\_report.pdf](http://www.sonyfh.co.jp/ja/company/data/governance_report.pdf)

<http://www.td-holdings.co.jp/group/subsidiaries/>

[http://www.axa.co.jp/holding/annual\\_pdf/pdf2008/AJH11.pdf](http://www.axa.co.jp/holding/annual_pdf/pdf2008/AJH11.pdf)

<http://www.msig.com/about/index.html>

<http://www.msig.com/about/operation/index.html#pagetop>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nn\\_4328/DE/BMF\\_\\_Startseite/  
Aktuelles/Aktuelle\\_\\_Gesetze/Gesetzentwuerfe\\_\\_Arbeitsfassungen/  
Entw\\_\\_Finanzmarktaufsicht\\_\\_anl,templateId=raw,property=publica  
tionFile.pdf](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nn_4328/DE/BMF__Startseite/Aktuelles/Aktuelle__Gesetze/Gesetzentwuerfe__Arbeitsfassungen/Entw__Finanzmarktaufsicht__anl,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

[http://www.yulchon.com/mail/200908/overseas/YC\\_sub15.html](http://www.yulchon.com/mail/200908/overseas/YC_sub15.html)

<http://fsahandbook.info/FSA/html/handbook/Glossary/I>

[http://www.tokiomarine-nichido.co.jp/world/pdf/TMNF\\_2008\\_d.pdf](http://www.tokiomarine-nichido.co.jp/world/pdf/TMNF_2008_d.pdf)

<http://www.versicherungsgesetze.de/versicherungsaufsichtsgesetz/>

[http://financialstability.gov/docs/regs/FinalReport\\_web.pdf](http://financialstability.gov/docs/regs/FinalReport_web.pdf)